연구보고서

한 · 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6. 11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제 출 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 · 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 수행 기관 : 한국IT서비스학회

연 구 책 임 자 : 교 수 김현수(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공동과제책임자 : 교 수 김중한(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 수 안연식(경원전문대학 인문사회계열)
부 회 장 김규성(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공 동 연 구 원 : 실 장 유종호(한국소프트웨어자작권협회)
책임연구원 손정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공동연구원 강기봉(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2장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와 현황 분석 ····· 5
제1절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 ····· 5
제2절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 10
1.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분석 ····· 10
2. 한·미간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분석 ····· 15
3.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문별 경쟁력 분석 ····· 18

제3장 한·미 FTA 에서의 소프트웨어 산업관련 이슈 분석 ····· 35
제1절 한·미 FTA의 SW 관련 협상영역 ····· 35
제2절 통신/전자상거래 영역 분석 ····· 40
1. 통신/전자상거래 영역의 범위 ····· 40
2. 통신/전자상거래 영역의 주요 이슈 ····· 41
3. 통신/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영향도 및 대책 ····· 43
제3절 서비스 영역 분석 ····· 44
1. 서비스 영역의 범위 ····· 44
2. 서비스 영역의 주요 이슈 ····· 49
3. 서비스 영역에서의 영향도 및 대책 ····· 52
제4절 정부조달 영역 분석 ····· 53
1. 정부조달 영역의 범위 ····· 53

2. 정부조달 영역의 주요 이슈 ····· 55
3. 정부조달 영역에서의 영향도 및 대책 ····· 60
제5절 소프트웨어산업 전문가의 한 · 미 FTA 관련 의견조사 ····· 67
1. 전문가의견 조사 개요 ····· 67
2.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 ····· 68

제4장 저작권 관련 쟁점사항과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영향도 분석 ····· 72
제1절 일시적 저장 ····· 75
1. 개념 ····· 75
2. 주요 쟁점 사항 및 사례 분석 ····· 76
3. 고려사항 ····· 80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 ····· 81
1. 개념 ····· 81
2. 주요 쟁점 사항 및 사례 분석 ····· 83
3. 고려사항 ····· 93
제3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 94
1. 개념 ····· 94
2. 주요 쟁점 사항 및 사례 분석 ····· 95
3. 고려사항 ····· 102
제4절 저작권 보호기간 ····· 103
1. 개념 ····· 103
2. 주요 쟁점 사항 및 사례 분석 ····· 104
3. 고려사항 ····· 113
제5절 저작권 관련 쟁점 및 영향도 분석에 대한 요약 ····· 114

제5장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정책상의 제안 ····· 116

참고문헌 ····· 120

[부록1] 관련 용어 ····· 124
[부록2] 한 · 미 FTA 관련 설문조사 ····· 131

표 차례

<표 1-1> 한 · 미 FTA 추진 일정 ····· 1
<표 2-1> 소프트웨어산업 분류체계 비교 ····· 6
<표 2-2> 소프트웨어 사업자현황 ····· 8
<표 2-3> 소프트웨어산업 분류체계 매핑 ····· 9
<표 2-4> 소프트웨어 생산액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수출입 및 무역수지 ·· 11
<표 2-5>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액 규모 ····· 13
<표 2-6> 한미간 소프트웨어 산업 무역수지 비교 ····· 15
<표 2-7> 국내 IT서비스 영역에서의 제품별 점유구조 ····· 16
<표 2-8> IT서비스 산업영역에서의 10대기업 내수시장 점유율 ····· 16
<표 2-9>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입 규모 ····· 17
<표 2-10> 우리나라의 대미 소프트웨어 수출액 변화 ····· 17
<표 2-11> 국내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의 미국 기업 점유율 ····· 21
<표 2-12> 2004년 분야별 기업용 SW시장의 규모 및 국산 점유율 ····· 22
<표 2-13> 패키지 소프트웨어 수출입 및 무역수지 ····· 23
<표 2-14> 국내 상위 10대 IT 서비스 기업 매출액 실적 추이 ····· 24
<표 2-15> 국내 상위 10대 IT 컨설팅 서비스 기업 매출액 실적 추이 25
<표 2-16> 디지털 콘텐츠 수출 규모 ····· 29
<표 2-17> 미국 대 한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규모 비교 ····· 31
<표 2-18> 한국의 대 미국 디지털제품 수출입 실적 ····· 32
<표 2-19> 미국 주요 핵심부문 저작권산업의 수출액 ····· 34

<표 3-1> 한 · 미 FTA에서의 분과별 주요 내용 ····· 37
<표 3-2> SW 산업의 영역 및 FTA 협상영역 ····· 39
<표 3-3> 통신/전자상거래 부문의 한미 협상이슈 ····· 42
<표 3-4> 주요 디지털 제품의 우리나라 관세율 ····· 43
<표 3-5> UR에서의 서비스 분류 ····· 45

<표 3-6> GATS의 4가지 서비스 공급모드 ····· 46
<표 3-7>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양허 모형분류 ····· 47
<표 3-8> 한국의 GATS에서의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양허 분류 ····· 48
<표 3-9> 미국의 SaaS 시장 규모 전망 ····· 50
<표 3-10> 한국의 SaaS 시장 규모 전망 ····· 50
<표 3-11> 사업서비스에서 컴퓨터관련 서비스의 최근 FTA 체결내역 52
<표 3-12> 미국연방정부의 IT 투자규모 예상액(2005~2007) ····· 54
<표 3-13> 미국 본토외(해외 및 미국령) 조달 실적 (2004년 기준) ···· 55
<표 3-14> 미국의 WTO/FTA 정부조달협정 추인 주(州) 현황 ····· 57
<표 3-15> 기술중립성에 대한 개념의 차이 ····· 58
<표 3-16> 개방형 표준에 대한 지원정책 사례 ····· 59
<표 3-17> 무역협정에 따른 Buy American Act 미적용 하한선 ····· 61
<표 3-18> 한 · 미 FTA 체결에 따른 소프트웨어업체 의견 ····· 63
<표 3-19> 한 · 미 FTA 체결에 따른 소프트웨어업체의 서술식 의견 ·· 70

<표 4-1> 저작권 관련 주요 이슈별 개념과 예상 쟁점 ····· 74
<표 4-2> 일시적 저장 관련 한미 규정 비교 ····· 78
<표 4-3> 일시적 저장 관련 해외 입법 사례 ····· 78
<표 4-4> 기술적 보호조치의 구분 ····· 83
<표 4-5>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201조의 기본 구조 ····· 84
<표 4-6> 기술적 보호조치 이슈 관련 한미 규정 비교 ····· 87
<표 4-7> 기술적 보호조치 이슈 관련 해외 입법 사례 ····· 89
<표 4-8> 저작권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면책 이슈 관련 한미 규정 비교 96
<표 4-9> 미국 저작권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유형별 면책 사유 사례 ···· 99
<표 4-10> 저작권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이슈 관련 해외 입법사례 99
<표 4-11>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슈 관련 해외 입법 사례 ····· 106
<표 4-12>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슈 관련 한미 규정 비교 ····· 107
<표 5-1> SW 산업영역별 한 · 미 FTA 체결 관련 주요 이슈/영향도 및 정

책 대안 ····· 116

<표 A-1> 응답업체의 미국진출현황 ····· 133
<표 A-2> 한 · 미 FTA 체결의 영향을 받는 예상시점에 대한 응답 ·· 134
<표 A-3> 한 · 미 FTA 체결이 주는 긍정적 영향 ····· 136
<표 A-4> 한 · 미 FTA 체결시 가장 유리한 기업군 ····· 137
<표 A-5> 한 · 미 FTA 체결시 기업의 구조조정 발생여부 ····· 138
<표 A-6> 한 · 미 FTA 체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손실 ····· 138
<표 A-7> 한 · 미 FTA 체결시 가장 불리한 기업군 ····· 139
<표 A-8> 한 · 미 FTA 체결시 가장 유리/불리한 기업군 ····· 141
<표 A-9> 한 · 미 FTA 체결 후 인력파견 계획 ····· 141
<표 A-10> 한 · 미 FTA 체결에 대한 지지 정도 ····· 142

그림 차례

<그림 2-1>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역 ····· 10
<그림 2-2> 소프트웨어 생산액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수출입 및 무역수지 ···· 12
<그림 2-3> 국가별 소프트웨어 수출액 비중 ····· 14
<그림 2-4> 국가별 소프트웨어 수출액 금액 ····· 14
<그림 2-5> 한국 소프트웨어의 미국 수출실적 추이 ····· 18
<그림 2-6> 소프트웨어 선진 3국과의 내수 및 수출규모 비교 ····· 19
<그림 2-7>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해외업체 점유율 ····· 19
<그림 2-8> 미국 IT시장의 규모 ····· 20
<그림 2-9> 주요 소프트웨어 패키지 유형별 국내업체 비율 ····· 23
<그림 2-10> 국내 ASP 산업 시장규모 ····· 27
<그림 2-11> 국내 ASP 이용 기업체 및 세계 ASP 산업 시장규모 ····· 27

<그림 3-1> 소프트웨어의 무관세 현황 ····· 36

<그림 A-1> 한 · 미 FTA 체결의 영향을 받는 예상시점에 대한 응답 ····· 134
<그림 A-2> 한 · 미 FTA 협상 타결시 기대되는 기업활동에의 예상이익 135
<그림 A-3> 한 · 미 FTA 협상 타결시 기대되는 기업활동에의 예상이익 135
<그림 A-4> 한 · 미 FTA 체결시 가장 유리한 기업군 ····· 137
<그림 A-5> 한 · 미 FTA 체결시 기업의 구조조정 발생여부 ····· 138
<그림 A-6> 한 · 미 FTA 체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손실 ····· 139
<그림 A-7> 한 · 미 FTA 체결시 가장 불리한 기업군 ····· 140
<그림 A-8> 한 · 미 FTA 체결 후 인력파견 계획 ····· 14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으로서, 당사자간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로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혹은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협정을 진행 중이며, 현재 3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로서, 전체적인 한·미 FTA[1] 추진 일정은 다음 <표 1-1>에 나타나 있다.

<표 1-1> 한 · 미 FTA 추진 일정

일정	추진 내용
2006. 2. 3	협상개시 선언
2006. 5. 9	협상초안 교환
2006. 6. 5. ~ 9	1차 협상개최(워싱턴)
2005. 7. 10 ~ 14	2차 협상 개최(서울, 양허안 교환)
2005. 9. 5 ~ 9	3차 협상 개최(시애틀)
2006. 10. 23 ~ 27	4차 협상 개최(제주)
2006. 12	5차 협상개최(워싱턴)
2007. 3	공식협상 마감
2007. 4 ~ 6	미의회 사후 검토(90일)
2007. 6. 30	미행정부 신속협상권 소멸
2007. 6. 30 이후	양국 의회 비준 및 발효

(자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1) 한국과 미국의 FTA의 공식 명칭은 KORUS FTA이고, 미국 USTR 홈페이지에는 Korea-U.S Free Trade Agreement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 미 FTA, 한미 FTA,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한국-미국 FTA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 · 미 FTA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 도하협정에서 Globalization을 위한 national protectionism 방지를 위한 합의를 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의와 체결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한·미 FTA에 관한 협상이 본격화 되고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은 우리나라의 주거래 대상국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의 협정이어서 이후의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모델 케이스가 될 것임

○ 중요한 안건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이슈들의 대부분이 전통 산업의 관점에서 언급이 되고 있으며 실물거래에 있어서의 이해득실이 중시되고 있음

○ 현재 지식사회, 정보사회로 변환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전통산업에 있어서의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산업(IT서비스와 지식 산업 포함)에 있어서 영향을 분석하고 다각적으로 파급 효과를 추정하여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협상 중인 한·미 FTA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각 항목들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미래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한미 양국 간 소프트웨어 관련 통상현안 심층 분석

○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상에 근거한 한미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관계의 심층 분석

○ 한 · 미 FTA에 있어서의 관련 협상안에 참고할 수 있는 고려사항 및 정책적 대안의 도출

○ 한 · 미 FTA에서의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부문별 협상에 대한 근거 마련

○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각 영역별 기술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에서의 거래우위 확보전략을 도출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정책대안의 제시

제2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 미 FTA 체결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음 항목들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와 현황의 개략적 분석
(2) 한 · 미 FTA 협상 영역과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영향도 분석
(3)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 사항과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영향도 분석
(4)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정책상의 제안

제2장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와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정의하고, 현황을 개략적으로 분석한다.

제1절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 분류기준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조에서의 정의 내용을 살펴본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즉, 이 정의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기본적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이에 대한 설치와 운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의 서비스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국내 정보시스템을 위한 인프라 전체로 인식할 수 있다. 아래 <표 2-1>에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산업 분류체계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표 2-1> 소프트웨어산업 분류체계 비교

구 분	정보통신산업협회 산업 분류	IDC 산업분류 체계
패키지소프트웨어	시스템SW, 개발용SW, 응용SW, 기타 패키지SW	System Infrastructure Software와 Application으로 크게 나누어 파악
컴퓨팅서비스/컴퓨터관련 서비스	시스템 통합(SI),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SM), 자료처리(DP), ASP, 정보보호서비스, 기타 컴퓨팅 서비스	IDC는 컴퓨팅 서비스를 소프트웨어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IT Service시장에서 따로 파악함. 컨설팅, SI, IT 교육, 아웃소싱 등이 여기에 해당됨
멀티미디어콘텐츠개발서비스	정보용, 오락/ 게임용, 디지털 출판물/영상물, 기타 콘텐츠	Application Development & Deployment Software
데이터베이스제작서비스	DB 제작, DB 검색	해당사항 없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임베디드 OS, 기타	해당사항 없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체계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사업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제도(SW산업진흥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다음에서와 같이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8호) 내용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18호(2004.3.27) 내용
제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임하에 수행하는 사업 2.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공급하는 사업 3.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 4.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

이와 같이 신고제도에 의해 파악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소프트웨어 사업자현황

구 분	업체수	구성비(%)	비 고
컴퓨터관련서비스	2,916	38.6	
패키지소프트웨어	1,034	13.7	
디지털콘텐츠	287	3.8	
데이터베이스	190	2.5	
기 타	3,133	41.4	(매출액 미신고 기업)
합 계	7,560	100.0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5)

한편,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사업대가 산정 체계를 고려하여, 크게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산정,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의 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및 자료 입력비의 산정, 그리고 정보전략계획 수립비의 산정 등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IT관련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IBM사는 IT서비스를 응용개발 및 시스템통합, 응용관리서비스, 응용주문개발, 비즈니스 연속성 및 복구, 최적화된 교육솔루션, 장비제안, 인프라 및 시스템관리, IT성과, 유지보수, 네트워킹, 아웃소싱/호스팅, 응용패키지개발, 재배치서비스, 보안, 서비스지향 아키텍쳐, 중형시장비즈니스, 스토리지, 기술지원, 무선 등 총 19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영역을 소프트웨어 산업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다음 <표 2-5>에서와 같이 패키지소프트웨어, 컴퓨팅서비스, 멀티미디어콘텐츠개발서비스,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표 2-3> 소프트웨어산업 분류체계 매핑

구 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IBM의 IT서비스 사업영역
패키지소프트웨어	시스템운용환경 구축	응용주문개발, 응용패키지개발
컴퓨팅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전략계획 수립 시스템운용환경 구축	응용개발 및 시스템통합, 응용관리서비스, 응용주문개발, 비즈니스연속성 및 복구, 최적화된 교육솔루션, 장비제안, 인프라 및 시스템관리, IT성과, 유지보수, 네트워킹, 아웃소싱/호스팅, 재배치서비스, 보안, 서비스지향 아키텍쳐, 중형시장 비즈니스, 스토리지, 기술지원, 무선
멀티미디어콘텐츠 개발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입력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입력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역을 다음 <그림 2-1>에서와 같이, 패키지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IT)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서 FTA에서 다루어질 세부 협상영역과 관련하여서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공통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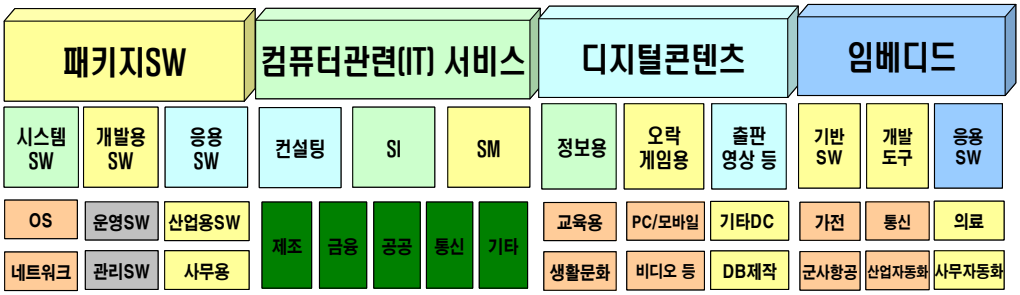

<그림 2-1>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역

(자료: 백영란, SW산업발전방향- 수출확대방안, 2005년 발표자료)

제2절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1.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분석

위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분류에 근거하여 본 절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되, 특히 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관계 분석을 중점적으로 교역 관계 기초 통계를 확보하고 현재 상호 투자 관계를 분석한다.

아래의 <표 2-4>는 현재 소프트웨어 생산액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의 분야별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및 무역수지 현황을 보여준다. 2005년도 총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액은 약 20조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수출은 약 3% 정도, 수입은 약 2%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생산액은 2000년~2005년 기간 동안 거의 2배의 성장규모를 보이고, 수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에 7.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부분은 국내 산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역수지를 분석해 보면, 패키지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적자폭이 크고, 컴퓨터관련 서비스나, 디지털콘텐츠서비스에서는 흑자를 보

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소프트웨어 생산액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 천US$)

구분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04	2005P	2004	2005P	2004	2005P	2004	2005P
패키지소프트웨어	3,842,502	5,093,622	91,911	61,918	392,751	474,240	-300,840	-412,322
컴퓨터관련서비스	13,477,516	13,758,338	220,582	228,096	22,311	11,233	198,271	216,863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1,105,513	1,512,172	201,035	317,548	1,589	64	199,446	317,484
데이터베이스제작·검색대행	233,287	276,178	811	7,032	-	-	811	7,032
합 계	18,688,818	20,640,310	514,339	614,594	416,651	485,537	97,688	129,057
(비율, %)	100	100	2.75	2.98	2.23	2.35		

(자료: 국내SW시장현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6.1, 생산액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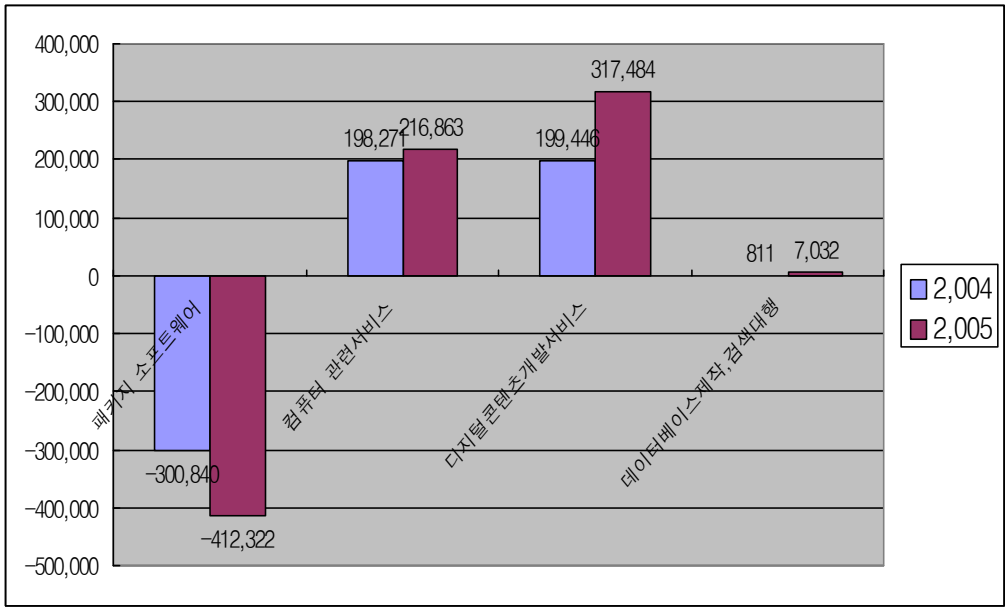

<그림 2-2> 소프트웨어 생산액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수출입 및 무역수지

전체 무역수지 면에서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교역국을 분석하면,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컴퓨터 관련서비스, 디지털컨텐츠 개발서비스는 동남아국가가 주교역국이다.

그러나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 2-5>에서와 같이 평균 43% 정도의 연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5>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액 규모

(단위 : 천US$)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패키지소프트웨어	63,175	108,038	86,559	75,688	113,170	114,490
컴퓨터관련서비스	77,798	125,550	299,269	399,041	432,035	477,991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14,863	56,918	84,772	118,447	285,168	596,082
합 계	155,836	290,506	476,600	593,176	830,373	1,188,563
(증가율, %)	2.75	86.4	62.0	26.0	40.0	43.1

(자료: KIPA, 05년 패키지소프트웨어 수출액에는 임베디드SW 수출액포함)

다음 <그림 2-3>는 Knowledge Research Group에서 2003년 또는 2004년에 연간 1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이 있는 우리나라의 50개 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보고서(2005)에 나타난 국가별 수출액 비중이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수출은 2003년도에는 일본, 2004년도에는 중국이 주요 수출국이었으며, 미국의 비중은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약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 국가별 소프트웨어 수출액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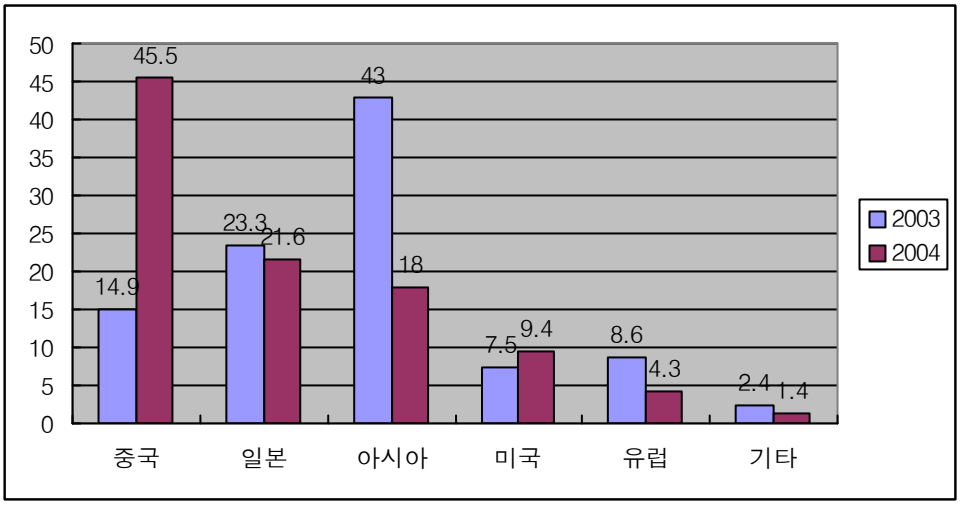

(자료: Knowledge Research Group,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 수출기업 SW 수출동향, 2005. 1, 2면)

<그림 2-4> 국가별 소프트웨어 수출액 금액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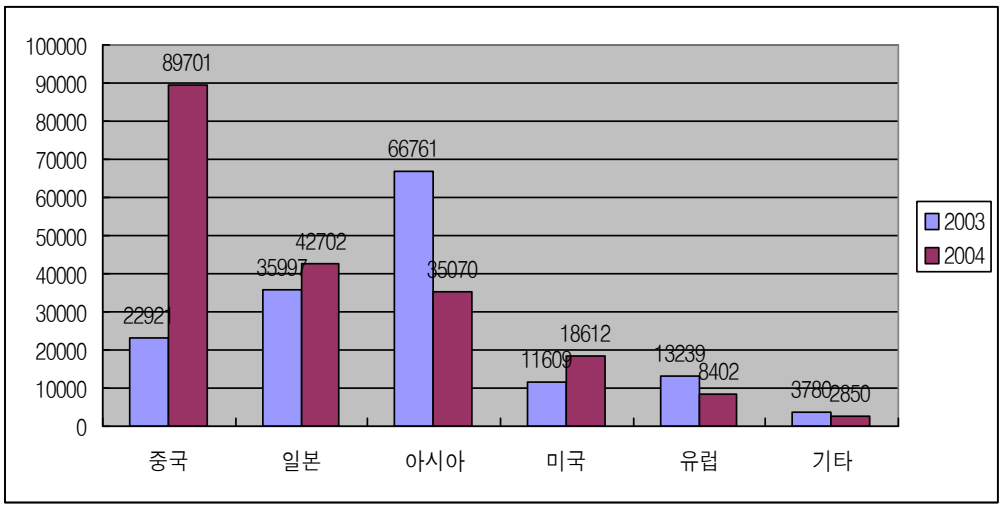

(자료: Knowledge Research Group,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 수출기업 SW 수출동향, 2005. 1, 3면)

2. 한・미간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분석

한・미의 소프트웨어 부문의 교역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총괄적인 상호 경쟁력을 분석한다. 다음 <표 2-6>에서는 한국은 미국과의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부문의 교역에서 2004년을 기준으로 8,400억원의 무역적자를 나타냈으며, 반면에 미국은 1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6> 한미간 소프트웨어 산업 무역수지 비교

(단위: 백만원, 백만달러)

구분	한국			미국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수출	수입	무역 수지
HW	61,616,479	40,365,287	21,251,192	147,393	232,320	-84,927
통신,방송	553,437	955,879	-402,442	4,825	0	4,825
SW	301,510	1,140,975	-839,465	10,481	1,216	9,264
IT서비스	796	4,299	-3,503	4,475	967	3,507
SW+IT서비스	302,306	1,145,274	-842,968	14,956	2,183	1,271
정보통신산업	312,249,566	216,705,760	95,543,806	167,173	234,503	-67,331

(자료: 한미간 SW산업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KIPA, 2005)

이하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 소프트웨어 분야별 교역현황을 분석한다. 다음의 <표 2-7>에서는 국내 관련 시장의 제품별 점유율 및 IT서비스 산업의 해당국별 시장점유율이 나타나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외국 제품이 97.2%를 차지하고 있고, IT 서비스 부문에서만 국내 업체가 87.1%를 차지하고 있다.

<표 2-7> 국내 IT서비스 영역에서의 제품별 점유구조

(단위: %)

국가	국내	국외
하드웨어	2.8	97.2
소프트웨어	14.5	85.5
IT 서비스	87.1	12.9

또한 IT 서비스에서만 보면, 국내의 10대 기업이 79%를 차지하고 있어서 독과점형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IT서비스 산업은 미국 기업에 의해서 100%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IT서비스 산업영역에서의 10대기업 내수시장 점유율

(단위: %)

국가	10대기업 시장점유율	자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한국	79	70
미국	24	100

(자료원: Gartner, 2002, 한국은 IDC 2003)

또한 다음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도체, 메모리, 셀룰러폰, 컴퓨터 등이 포함된 IT산업 전체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입에서 흑자를 보이지만,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미국에서의 수입액이 과도하게 많아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9>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입 규모

(단위: 천$)

구분	2003		2004	
	수출	수입	수출	수입
IT산업 전체[2]	11,707,071	7,073,598	15,372,238	7,650,409
소프트웨어	8,867	193,418	15,053	139,336

(자료원: ICA, KITA, 2005. 3)

다음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수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액의 비중이 15.5~22.1%로 나타난다. 다음 <표 2-10>와 <그림 2-5>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수출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0> 우리나라의 대미 소프트웨어 수출액 변화

(단위: 천달러, %)

국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패키지 소프트웨어	25,321 (29.3)	23,564 (31.1)	24,658 (21.8)	24,856 (21.7)
IT서비스	38,213 (12.8)	58,001 (14.5)	79,204 (18.3)	89,687 (18.8)
디지털 콘텐츠	17,015 (20.1)	10,398 (8.8)	79,793 (28.0)	103,188 (17.3)
계	80,549 (17.1)	91,963 (15.5)	183,655 (22.1)	217,731 (18.3)

(자료: KIPA, 국내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실적, 2006; 2005년은 북미지역 수출액)

2) IT산업 전체에는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됨

<그림 2-5> 한국 소프트웨어의 미국 수출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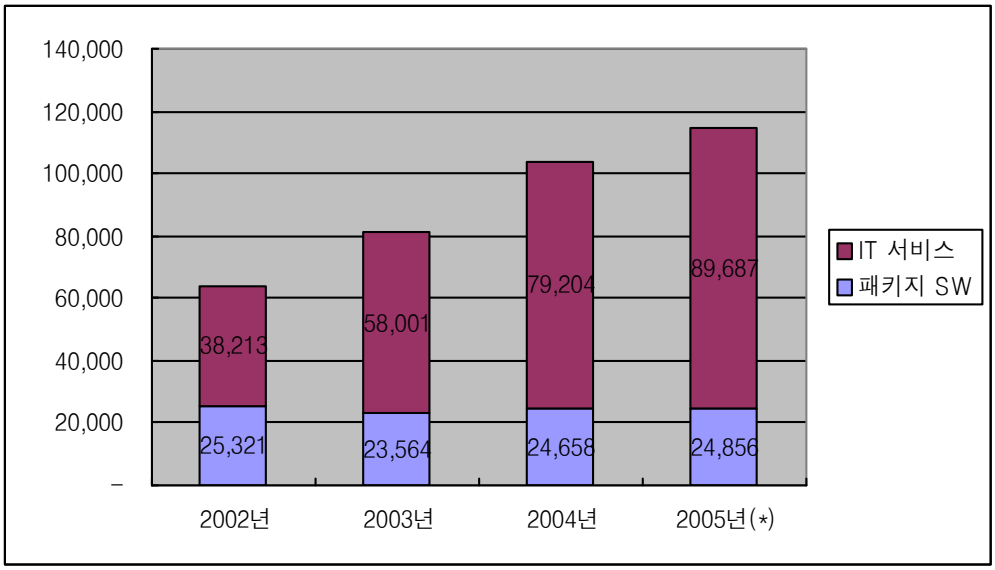

3.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문별 경쟁력 분석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연관분석(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5)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지만, 총 수출의 48%, 총수입의 43% 그리고 총 무역수지 흑자의 약 66%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분야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하드웨어 부문은 큰 폭의 흑자를,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연간 8,40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다음 <그림 2-6>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수출경쟁력이 취약하고, 내수기반에 의해 영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소프트웨어 선진 3국과의 내수 및 수출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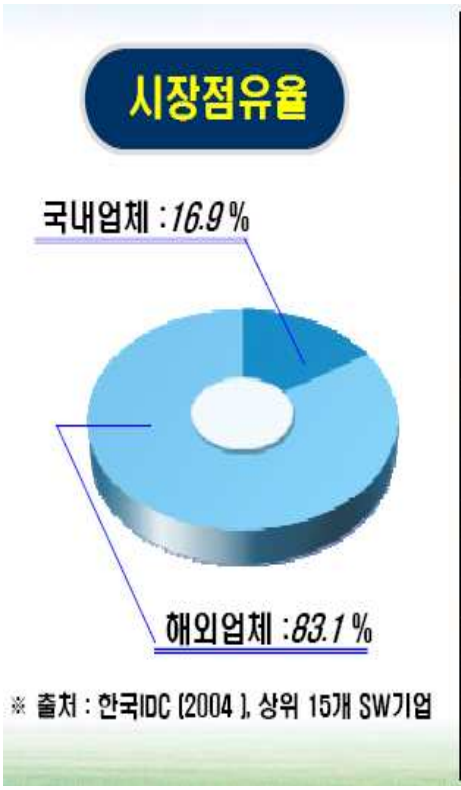

순위	업 체 명	매출액(백만원)	시장점유율(%)
1	Microsoft	212,857	10.12
2	IBM	139,402	6.63
3	Oracle	98,015	4.66
4	EMC	68,822	3.27
5	SAP	48,090	2.29
6	삼성SDS	38,586	1.83
7	Computer Associates	27,880	1.33
8	안철수 연구소	26,803	1.27
9	한글과 컴퓨터	26,150	1.24
10	PTC	25,659	1.22
11	핸디소프트	23,703	1.13
12	티맥스소프트	23,266	1.11
13	HP	20,784	0.99
14	Dassault Systemes	19,873	0.94
15	Adobe Systems	19,750	0.94
	계	819,640	38.97%
	국내업체점유율	138,508	16.9%
	외국업체점유율	681,132	83.1%

<그림 2-7>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해외업체 점유율

미국은 한국 경제력의 20배 이상의 세계최대 경제 강대국이며, 수입액만도 1조3천억 달러 이상이다. 또한 한, 중, 일 아시아 3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로서 불평등한 대우를 참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다음 <그림 2-8>에서와 같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는 세계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세계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미국 기업은 83개 업체, IT서비스 부문은 세계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53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다. IDC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는 200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0.9~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성장세는 세계 평균치를 상회하는 9%를 전망하고 있다(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5. 12).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CAGR 2005년 08월22일
합계	376,374.4	393,722.8	416,534.9	444,579.0	472,557.0	5.9
하드웨어	119,815.6	124,431.9	132,072.8	141,974.0	150,695.4	5.9
소프트웨어	92,065.4	97,687.2	104,168.6	111,777.3	119,746.6	6.8
IT서비스	164,493.4	171,603.7	180,293.5	190,827.7	202,115.0	5.3
성장률(%)	0.0	4.6	5.8	6.7	6.3	0.0
북미에서의 비중 (%)	93.8	94.0	94.1	94.3	94.4	0.0
세계에서의비중 (%)	41.0	40.8	40.7	40.8	40.7	0.0

<출처 : IDC 2004 >

<그림 2-8> 미국 IT시장의 규모

가. 패키지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은 국내시장에서 외산 소프트웨어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다음 <표 2-11>은 2004년말 IDC의 자료로서, 이에 의하면 국내 50대 패키지소프트웨어 업체의 매출액 중에서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9%에 불과하며, 미국기업의 점유율은 약 38%에 달한다. 특히 국내의 패키지소프트웨어 시장에서 Microsoft, IBM, Oracle사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성장률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1> 국내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의 미국 기업 점유율

(단위: 백만원)

순위	회사명	라이선스 매출액	국내기업 시장점유율(%)
1	MS	212,857	10.12
2	IBM	139,402	6.63
3	Oracle	98,015	4.66
4	EMC	68,822	3.27
:	:	:	:
50위까지 미국업체 소계		798,474	37.97
50위까지 전체 소계		1,137,106	54.04
전체 합계		2,104,130	100.00

(자료: IDC, 2005, 국내 패키지 Top 10 라이선스 매출, 2004년말 기준)

또한 세계 1,000대 기업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8개에 불과하다. 좀 더 세부적으로 <표 2-12>에서와 같이, 국내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보안(Security)과 ERP를 제외하면 미국 등 해외기업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다음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체제(OS), DBMS 등 기반분야에서는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표 2-12> 2004년 분야별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 및 국산 점유율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매출액	해외기업		국내기업	
		매출액	시장점유율 (%)	매출액	시장점유율 (%)
ERP	82,145	42,923	52.3	39,222	47.7
SCM	16,578	13,696	82.6	2,882	17.4
CRM	24,109	14,839	61.5	9,270	38.5
SMS	72,266	57,070	79.0	15,196	21.0
NMS	24,330	17,028	70.0	7,302	30.0
Security	147,036	30,404	20.7	116,632	79.3
Storage	124,356	119,712	95.9	5,180	4.1
합계	491,356	295,671	60.2	195,684	39.8

(자료: IDC,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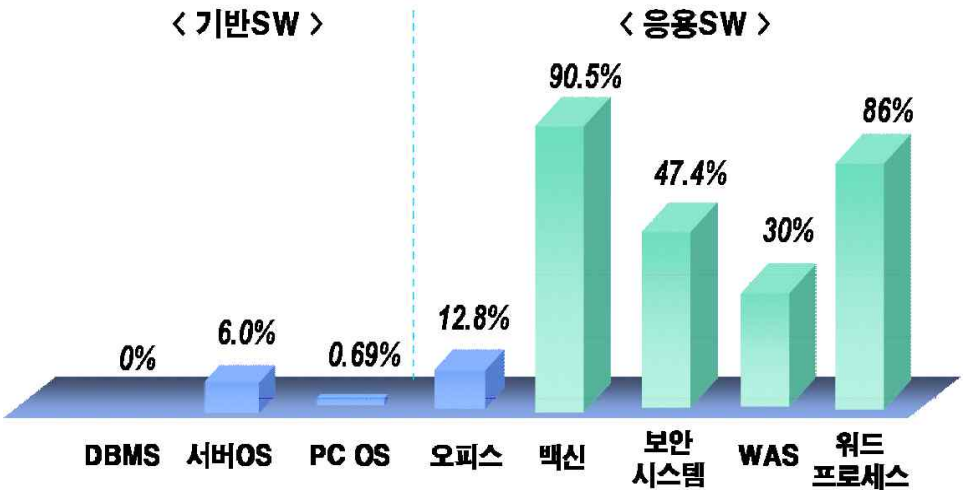

<그림 2-9> 주요 소프트웨어 패키지 유형별 국내업체 비율
(자료: 주요 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분석, NCA, 2004. 12)

또한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표 2-13>에서와 같이 수출에서 무역수지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만을 놓고 보면 FTA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약할 것이다. 다만,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증가 추세에 따른 영향문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2-13> 패키지 소프트웨어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 천US$)

구 분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04	2005P	2004	2005P	2004	2005P	2004	2005P
패키지 소프트웨어	3,842,502	5,093,622	91,911	61,918	392,751	474,240	-300,840	-412,322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안(Security) 부문 등 경쟁력이 있는 패키지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투자 및 기술개발에 노력함으로써, 미국 기업에 종속상태를 탈피하면서 수출 유망제품을 적극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 IT 서비스

IT 서비스 부문은 국내 사업에 대해서 비교적 국내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약 60~70% 정도로서 높은 편이며, IT서비스 부문의 미국 시장은 세계 시장에서 40~5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면서도 전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독무대로 점유되고 있다. 국내의 IT서비스 부문에서도 국내 업체의 비중이 높다고는 하지만, <표 2-14>에서와 같이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액 중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다가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의 IT컨설팅 서비스부문만을 분석한 자료에서는 <표 2-15>에서와 같이 미국 기업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외의 분야에서도 미국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높은 편이다.

<표 2-14> 국내 상위 10대 IT 서비스 기업 매출액 실적 추이

(단위: 억원, %)

순위	회사명	2003년	2004년	성장율(%)
1	삼성SDS	10,221	10,622	3.9
2	LG CNS	7,347	7,815	6.4
3	SK C&C	5,234	5,633	7.6
4	한국 IBM	4,258	4,689	10.1
5	한국 HP	2,076	2,131	2.6
6	포스데이타	2,187	2,075	-5.1
10위까지 전체 소계		37,445	39,558	5.6
미국기업 합계		6,334 (16.9%)	6,820 (17.2%)	

(자료: IDC, 2004, & 2005, HW 매출 및 애플리케이션 유통 매출은 제외)

<표 2-15> 국내 상위 10대 IT 컨설팅 서비스 기업 매출액 실적 추이
(단위: 억원, %)

순위	회사명	2003년	2004년	성장율(%)
1	IBM Korea	90.1	100.5	11.5
2	삼성 SDS	77.1	89.6	16.2
3	Accenture	41.4	45.6	10.2
4	LG CNS	25.6	30.4	18.6
5	EMC	22.0	24.7	12.3
6	HP Korea	24.1	25.4	5.2
10위까지 전체 소계		340.0	375.1	10.3
미국계 합계		208.1 (61%)	224.4 (60%)	

(자료: IDC, 2005, 각 기업의 IT컨설팅 매출과 임베디드 컨설팅 매출을 의미함)

그러나 IT서비스 분야는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고, 국내 최초로 삼성SDS에서 삼성그룹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삼성SDS의 아웃소싱 수행능력이 인정되어 국내 최초로 미국 IT아웃소싱 시장에 진출하였는데, 미국 국방부 산하 72개 전산센터(DOIM) 가운데 하나인 '메릴랜드 전산센터'에 대한 IT아웃소싱 서비스 계약이 그 사례로서 (2003년 10월 초. 5년간 총 3000만달러 즉, 360억원의 계약규모), 미국 시장에 진출 전망을 높이고 있다(KIPA, 2003. 12).

다.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화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화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ASP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 서버에 설치해 고객에게 일정 기간 사용료를 받는 서비스 또는 사업자'이다. 즉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사용료를 내고

일정 기간 빌려 쓰는 IT 임대서비스 산업으로, 예를 들면 그룹웨어나 전사적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등은 물론 자영업자의 회계 관리, 세금계산서 처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 사용자가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인력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고품질 컨설팅 인력과 고품질 패키지 등을 이용해 경영의 업무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차세대 IT 전략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ASP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산자원을 고객에게 빌려주고 일정 기간 사용한 만큼 돈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 등 고객 입장에서는 품질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발생하면 다른 ASP사업자로 바꾸면 된다. 국내시장에서는 중소기업 위주로 ASP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 시장규모도 커지고 있다. 정통부가 2006년도에 ASP사업자 148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ASP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SP 가입 중소기업 수는 모두 67만여 개에 달했으며, 이것은 2005년 말 57만여 개에서 10만곳(15.2%)이나 증가한 수치이다(매일경제신문, 2006. 8. 16자). 이는 2002년 ASP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14만개 업체이었던 것에 비하면 무려 454%나 증가한 수치이며, 2008년쯤에는 100만개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IT 서비스 사용 유형별로는 회계·급여·재고관리 등 기업 내 단일 업무가 63.4%로 가장 많았고 기업 내 업무 통합솔루션이 22.1%, 기업간 협업 및 공동거래 서비스는 9.9%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2002년 조사 때는 1,071억원이었던 시장 규모가 2006년에는 2,335억원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2-10> 국내 ASP 산업 시장규모

한편, 한국전산원에 따르면 세계 ASP산업은 작년 54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5% 성장했으며, 2009년에는 107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ASP시장은 작년 4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2.9% 성장했으며 2009년에는 83억 달러에 도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MS나 IBM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들도 웹서비스 표준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ASP나 SaaS(Software As A Service) 등 사용자 중심의 '빌려 쓰는 IT'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다.

<그림 2-11> 국내 ASP 이용 기업체 및 세계 ASP 산업 시장규모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소프트웨어를 제품 중심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으로 최근 SW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로서, 웹을 다른 소프트웨어를 위한 운영 플랫폼으로 삼아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온-디멘드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ASP와 차별화되고 있다. 미국 CRM 전문업체인 세일즈포스닷컴(Salesforce.com)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모델을 표방하고, 2006년 1월에 발표한 앱익스체인지(AppExchange)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어도비 시스템즈, 비즈니스 오브젝트, 구글 등의 파트너를 통한 200여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오픈소스 SW(OSS) 기업이나 구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을 비롯해 기존 라이선스 제도를 고수해오던 MS나 SAP마저 SaaS 모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SaaS에 대해서 가트너는"하나 이상의 공급업체가 원격지에서 보유・제공・관리하는 SW를 뜻하며, 공급업체는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고객에게 SW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이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거나 월・년 단위의 이용료를 낼 수도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를 CD형태로 구매하던 형태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웹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형태라는 점이 외형적인 큰 차이다.

국내에서도 KT, 데이콤, SKT, LG CNS 등 많은 기업이 관련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SP 서비스 시장이 발전하는 이유는 전체 고용인구 중 86.5%를 차지하고 있는 300만개에 이르는 국내 중소기업에서의 정보화 수요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작용하는 때문이다. 즉,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설치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

롭게 정보처리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서, 기술적으로는 웹서비스의 확산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디지털 콘텐츠

국내 디지털 콘텐츠 해외 수출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23%나 성장하는 등 급성장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의 수출 규모를 보면, 다음 <표 2-16>에서와 같이 미국의 1/18 정도 규모에 그치는 수준이다.

<표 2-16> 디지털 콘텐츠 수출 규모

(단위: 천 달러)

구분	2004	2005	성장율
게임	251,423	336,281	33.8%
애니메이션/캐릭터	60,024	63,106	5.1%
디지털 영상	10,681	18,842	76.4%
정보콘텐츠	29,208	26,823	-8.2%
e-러닝	11,290	12,243	8.4%
디지털 음악	14,183	16,846	18.8%
전자출판	3,716	3,478	-6.4%
콘텐츠 거래 및 중개	-	1,495	-
솔루션	38,171	35608	-6.7%
합계	418,696	514,722	22.9%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게임의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디지털 기회지수(DOI) 세계 1위,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

학원) 기술 인프라 세계 2위의 국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2005년 현재 세계 시장의 23.5%를 장악하고 있다. 아시아, 유럽, 북미까지 서비스되고 있는 한국 온라인 게임 사용자는 약 1억명을 돌파하였다. 국산게임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 순이며, 모바일 게임은 미국, 일본 순, 그리고 세계 1위로 평가받는 온라인 게임은 중국, 동남아시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넥슨, 엔씨소프트 등 전반적인 국내 게임 기업의 경쟁력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로 평가되는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연구(2005)에 의하면, 현재 미주권에서는 콘솔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미국의 초고속망의 보급확대와 게임이용자들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향후 크게 증가할 전망이어서 국내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7> 미국 대 한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규모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미국(a)	한국(b)	비율(=b/a)	비고
게임	13,395	2,070	0.15	
디지털 영상	63,987	807	0.01	디지털캐릭터 포함
온라인 음악	694	201	0.29	
e-러닝	5,447	583	0.11	
웹정보콘텐츠	20,958	536	0.03	
온라인 출판	672	68	0.10	
온라인 포털	9,903	920	0.09	온/오프라인 포함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1,958	1,295	0.66	
계	117,014	6,480	0.06	

(자료: 2004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보고서, KIPA; PWC, 2005, Global Entertainment & Media Look: 2005-2009)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게임에서도 패키지 상품의 오프라인 거래가 온라인 환경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있고, 그동안 강세를 보여 오던 콘솔게임기에서도 온라인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요인이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내업체들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온라인게임의 기반이 되는 게임 콘텐츠 개발능력이 부족한 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점은 과제라고 하겠다.

한미간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에는 디지털 제품 이외에도 아날

로그 제품도 포함되므로 디지털 제품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의 무역수지에서 많은 적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8> 한국의 대 미국 디지털제품 수출입 실적

(단위: 천달러)

HS분류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비고
37 영화	6,829	34,551	8,101	34,721	사진 플레이트, 필름 등
49 인쇄물	87,981	74,758	92,474	85,496	서적, 간행물, 악보, 지도 등
8524 음성과 매체	72,206	88,144	75,084	94,127	LD, MT 등
8524 소프트웨어	8,896	95,727	9,790	125,675	음성 또는 영상용 재생용, 마그네틱 테이프 등
950410 비디오게임용구	64	4	160	20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lpfoc.or.kr/data)

디지털 콘텐츠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이지만,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별도의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방송, 통신부문과 함께 디지털 통합(digital convergence)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분석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 저작권 산업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 Integrated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이 발간하는 CIUS(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Economy)는 저작권산업을 핵심(core), 부분(partial), 저작권 관련(copyright-related), 유통(distribution)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에 의하면 핵심저작권산업은 출판관련 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라디오 및 TV방송, 광고, 동영상, 공연예술, 레코드 및 테이프를 포함한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산업은 정보검색, 컴퓨터 시설관리, 컴퓨터 렌탈 및 리싱(rental & leasing), 컴퓨터 유지보수 및 기타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산업은 1997년~2001년 기간에 연평균 3.1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핵심부문의 저작권산업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2002년 기준으로 약 6,262억 달러로 GDP의 약 5.98%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경제의 평균 국민소득 성장률의 약 3배에 달한다. 전체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는 1조 2,540억 달러로서 GDP(10조 4,808억 달러)의 약 12%를 차지하는 거대산업이다. 또한 저작권유통산업도 GDP 대비 비중이 2001년 기준으로 1.49%에 이른다.

다음 <표 2-19>에서 보면 미국의 핵심부문에 대한 해외 판매 및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수출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산업은 역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 및 영화, TV, 비디오 부문이며 1991년~2001년간 에 각각 2~3배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저작권산업이 미국의 주력 수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표 2-19> 미국 주요 핵심부문 저작권산업의 수출액

(단위: 십억 달러)

연도	기록매체 출판,복제	영화, TV,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신문, 서적, 잡지	합계	증가율 (%)
1991	6.15	7.02	19.65	3.36	36.19	-
1995	9.76	10.24	29.14	3.67	53.11	9.9
2000	9.76	14.5	56.88	4.33	85.46	7.6
2001	8.91	14.69	60.74	3.93	88.97	4.1
2002	8.47	17.00	59.97	3.82	89.26	0.3

(자료: IIPA,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Economy, 2004)

결론적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전체 시장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패키지소프트웨어 업체의 상위 50개 기업매출 합계의 70% 이상을 미국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IT서비스 시장은 미국기업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지만, 실제 IT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하드웨어 장비 등을 포함하면 IT서비스에서도 열위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IT 컨설팅 서비스 시장에서는 국내 컨설팅 시장 내의 상위 10개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제3장 한 · 미 FTA 에서의 소프트웨어 산업관련 이슈 분석

본 절에서는 한 · 미 FTA의 17개 분과별 협상영역 가운데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된 영역의 중점이슈를 분석한다.

본 절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한 한 · 미 FTA의 협상영역별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1절 한 · 미 FTA의 SW 관련 협상영역

우리나라는 UR협상을 통해서 다음 <그림 3-1>에서와 같이, 1996년도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관세가 이루어졌으며, 1997년 발효된 ITA(정보기술협정)에도 소프트웨어가 무관세 품목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가 UR협상에서 전면 개방을 실시하게 되어 소프트웨어 부문의 서비스에 대해서 개방된 상태에 있다.

HS	8524.39-1000					
품명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관세구분	관세율	단위당세액	기준가격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적용국구분
북한산	0.0	0.0	0	2005-01-01	2009-12-31	전체
한.칠레FTA협정세율(선택1)	0.0	0.0	0	2004-04-01	2006-12-31	일부
WTO협정세율	0.0	0.0	0	2002-01-01	2006-12-31	전체
기본세율	8.0	0.0	0	2002-01-01	2006-12-31	전체

<그림 3-1> 소프트웨어의 무관세 현황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의 분과별 협상안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표 3-1>에서와 같은 17개 협상분과(negotiating groups)를 대상으로 고찰한다. 17개 협상분과는 한·미 FTA 제2차 사전준비협의(2006. 4)에서 설치하기로 합의된 것이다.

<표 3-1> 한 · 미 FTA에서의 분과별 주요 내용

분 과	주 요 내 용
상품무역	상품(농산물 제외) 관세 인하/철폐
무역구제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농 업	농산품 관세인하/철폐 및 농산품 세이프가드
섬 유	섬유/의류 분야, 섬유 원산지 규정 등
원산지/통관	품목별 원산지기준 설정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
Sanitary & Phytosanitary (SPS)	위생 및 검역조치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기술장벽 및 표준인증
투 자	투자 자유화 및 보호
서비스	금융제외 서비스 자유화, 서비스 양허, 인력이동 자유화 등
금융 서비스	금융서비스 문제
통신/전자상거래	통신, 전자 상거래 분야
경 쟁	경쟁조치, 경쟁당국간 협력방안 등
정부조달	정부조달 자유화 방안, 양허하한선, 양허기관 확대 문제 등
지적 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 문제
노 동	노동 관련 문제
환 경	환경 관련 문제
분쟁해결/ 투명성/총칙	협정의 해석 등 분쟁해결절차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부문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유통시킬 것을 요구하는 협상 초안이 통

신/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나타났고, 현재 기술력의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 영구 무관세나 포괄적 비차별 원칙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비차별 원칙이 상호 무역에서 나타날 영향을 분석하고 자국산업보호(national protectionism)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 상호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지 여러 연구 방법을 통해서 도출한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점점 서비스화가 되어 가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한 소프트웨어 유통이 증가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역외서비스(offshoring[3])이나 외국 기업의 현지법인에 의한 고용창출 등이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전자상거래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 조달이나 투자의 분야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라 함은 전 분야에 걸쳐 이슈화 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의 미래상에 근거하여 분야별로 분석하되, 자유무역협정이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있어서 상호 호혜의 장치로 작동시키기 위한 논리적 근거와 제도적 필요사항들과 관련한 전략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영역을 <표 3-2>에서와 같이 분석했을 때, 상기 17개 협상분과 중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 영향이 제일 큰 분야는 지적재산권, 통신/전자상거래, 서비스, 그리고 정부조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에서 지적재산권 부문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관련 연구에서 이미 상세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신/전자상거래, 서비스, 정부조달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

3) 관리와 엔지니어링, R&D, 기술지원 프로세스 등을 제3의 국가에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영기법이다.

<표 3-2> SW 산업의 영역 및 FTA 협상영역

SW 산업 영역	주요 사업 내용	FTA 협상영역			
		상품 무역	전자 상거래	서비스	정부 조달
패키지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공급	▷	●	▷	●
IT서비스	정보전략계획(IT)컨설팅			●	●
	소프트웨어 개발	▷		●	●
	운영아웃소싱			●	●
디지털콘텐츠	DC 개발/구축/서비스	▷	●	▷	●
	DB 구축/서비스	▷	●	▷	●

(주) ●: 주요 대상 영역, ▷: 관련이 되는 대상 영역

이와 같은 매핑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현재는 상품 무역이 주요 거래형태였으나 향후에는 서비스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형태로 전환될 것이며, 중단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 방식에 주로 의존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IT서비스는 주로 서비스 유형으로서 거래될 것이며, 단지 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에서 일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당분간 상품무역 형태로 조달되는 추세를 감안하기로 한다. 그리고 디지털콘텐츠영역 역시, 패키지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재화의 일종으로서 상품무역의 추세에서 앞으로는 서비스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형태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에 주로 의존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

지막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모두 정부 및 공공부문의 협상영역에서 조달이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이다.

제2절 통신/전자상거래 영역 분석

1. 통신/전자상거래 영역의 범위

전통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상품 무역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에 의한 서비스 무역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무역이나 국제적 전자상거래가 등장하면서 이 분야에 다자무역체제인 WTO(DDA)는 1990년대 말로 정지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통신 및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논할 때, 디지털 재화를 논의할 수 있다.

디지털 재화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와 동시에 전달매체(예를 들면, CD 등)를 통해서 물리적인 형태로 전달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부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부문(시청각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온라인 게임 등)도 있지만, 이러한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디지털 재화 또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오락/취미, 뉴스매체, 도서/도서관자료, 시청각/원거리통신(웹TV/라디오 전송, 인터넷전화서비스, 전자메일/음성메일 등), 정보기술제품(온라인정보, 자료처리/저장/검색, 소프트웨어, CD/DVD 등)이 직접적으로 거래 대상제품이 되며, 간접적으로는 전문서비스(법률자문/문헌, 건축, 회계/세무상담, 기술자문, 의료상담 등), 컴퓨터와 기술(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치/유지보수 자문, 원격 데이터처리, 컨텐츠 서비스를 포함하는 웹사이트구축/유지

보수) 등에 관련될 수 있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화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제3절의 서비스 영역에서 논하기로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디지털 제품은 전자적으로 부호화된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 등의 제품이다. 이러한 디지털 제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은 물리적 매체를 통해서 또는 디지털화하여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고, 여기에서 후자가 본 절에서 논의할 대상이다.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 서비스(offline service)보다는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를 주요 대상으로 파악하게 되며 온라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인 디지털제품[4]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2. 통신/전자상거래 영역의 주요 이슈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술분야에서는 글로벌 리더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 보급 등 인프라 측면과 정부에서의 관련 지원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디지털제품에 대한 글로벌유통망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기술적 및 물리적 장벽이 이러한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상거래를 영구히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이며, 현재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지불결제, 전자인증, 개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의 보호나 소비자 보호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내국인과 최혜국 대우), 소비자 보호나 전자인증과

4)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은 전자적으로 부호화된 컴퓨터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 또는 그밖의 제품을 의미한다. 디지털 제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은 전달매체에 패키지화하여 물리적으로 보내거나(다운로드 방식), 디지털화하여 전자적으로(electronically) 전송할 수 있다(스트리밍 방식).

관련된 문제 등 자유무역협정의 근본정신을 보호, 계승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언젠가는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상거래의 자유화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3> 통신/전자상거래 부문의 한미 협상이슈

한국	미국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WTO 결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검토	-제품 및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을 허용하고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한국정부에 요구 -한국정부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관세부과를 하지 않도록 확약을 요구 -한국정부가 통신매체와 연계된 디지털 제품의 관세평가를 콘텐츠가 아니라 매체의 가격을 근거로 결정하도록 인증을 요구

디지털 제품의 관세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다. 다음의 <표 3-4>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온라인 거래에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며, 오프라인에서는 높지는 않지만 대체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현재로서 이러한 거래에 관세를 부과할 기술적 여건이 구축되지 않아서 영구한 무관세를 주장하고 있고, EU에서는 관세부과의 유예에 찬성하지만 영구화하는 것에는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는 관세문제보다도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제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표 3-4> 주요 디지털 제품의 우리나라 관세율

구분	온라인 거래	오프라인 거래	비고(주요 매체)
소프트웨어	무관세	0%	디스켓, CD
영화	상동	종량세(필름), 8%(DVD)	필름, DVD
음악	상동	8%	CD
게임	상동	8%	CD

따라서 이러한 관세율 정책은 향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한 상거래 비중의 증가로 부가세 감소, 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역할 축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이 예상된다.

3. 통신/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영향도 및 대책

통신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영향도 및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산업에서 통신/전자상거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주로 소프트웨어패키지, 디지털콘텐츠 등 디지털 재화로 볼 수 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현지 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에 의한 디지털재화의 거래형태에서는 소비자 보호, 전자인증, 경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현재도 무관세이지만, 기타 음악, 게임,

영화 등의 디지털 재화의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관세는 최소한의 기간내에 무관세로 전환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통신/전자상거래를 영구적으로 무관세로 설정하고자 요구할 경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향후 추이를 관찰하면서 대응해야 할 장기적 전략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상품무역이 전자상거래에 의한 무역형태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지 법인이 없거나, 장기적으로는 일부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감소나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의 축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서비스 영역 분석

1. 서비스 영역의 범위

서비스 시장은 법률, 회계, 세무, 금융, 교육, 의료, 방송, 광고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광의적으로 보면 농수산(1차 산업) 및 제조업(2차 산업)을 제외한 3차 산업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시장은 개별국의 국내법과 제도 등 국내 규제현황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구분되며, 시장개방이 곧 국내 규제의 철폐와 직결되므로 개별국 구분을 따르게 된다.

WTO 서비스협상을 위해 우리나라가 구분한 서비스부문은 국제연합(UN)의 표준상품분류코드(CPC)에 기준하여 다음 <표 3-5>에서와 같이 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사회, 관광, 오락·문화·스포츠, 운송, 기타 등 12개 항목의 대분류하에 총 155개의 소분류를 두고 있다.

<표 3-5> UR에서의 서비스 분류

분 야	하 부 분 류
사업서비스	전문직,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연구개발, 임대, 기타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우편, 통신, 시청각, 기타 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일반빌딩, 일반토목엔지니어링, 설치 및 조립, 빌딩완성 및 마무리작업, 기타 서비스
유통서비스	위탁에이전트, 도매·소매 서비스
교육서비스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하수, 폐기물, 위생 및 유사, 기타 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및 보험 관련, 은행 및 기타 금융, 기타 서비스
보건 및 사회서비스	병원, 기타 인간건강, 사회, 기타 서비스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호텔 및 레스토랑, 여행사 및 여행업, 여행가이드, 기타 서비스
오락,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유흥, 뉴스에이전시, 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 등 문화서비스, 스포츠 및 여가, 기타 서비스
운송서비스	해상, 내수면, 항공, 우주, 철도, 도로, 관로, 운송지원서비스
기타 서비스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자료: WTO(1991),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MTN.GNS/W/120))

이중에서 본 과제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 산업 영역은 사업서비스 중에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Computer and Related Services)의 분류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컴퓨터 설비자문, 소프트웨어 구현,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베이스, 기타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또한 FTA와 관련하여 WTO의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부속서)에서 서

비스 부문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4개 모드로서 구분하여 정의되고 있다. GATS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에서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외함에 따라 민간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3-6> GATS의 4가지 서비스 공급모드

서비스공급자 주재여부	구분	내용	예시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수입자 영토에 주재하지 않음	Mode 1 (국경간공급, Cross-border)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 공급	-서비스 자체만의 국경 이동 -미국에서 웹서비스를 통해서 한국의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Mode 2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소비자의 이동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을 방문하여 서비스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음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수입자 영토에 주재함	Mode 3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자본의 이동 -미국의 서비스 업체가 한국에 법인을 두고 영업
	Mode 4 (자연인 이동, Movement of Natural Persons)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노동의 이동 -미국 서비스 인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자료: 김종선 외 2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pp. 22, 수정보완)

대체로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이 주로 제기하는 이슈는 광고, 스크린

쿼터, 방송 및 케이블 TV에서의 외국제작물 상영쿼터, 위성 재전송, 더빙 및 지역광고 제한, 법률, 보험, 금융, 증권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IT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드러난 이슈는 거의 없다. 다만, 향후 IT서비스 부문에서 전개될 성장세와 변화추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IT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부문의 서비스 영역에 집중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위의 유형분류를 적용하여 IT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부문의 서비스에서는 다음에서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화(ASP, 웹서비스 등), 외국 솔루션구매, 외국 기업의 현지법인 설립, 투자지분 참여, 전문가 채용, 전문가의 초빙 컨설팅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표 3-7>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양허 모형분류

구분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비 고
Mode 1 (국경간공급, Cross-border)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화 (ASP, 웹서비스 등)	개방
Mode 2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외국 솔루션구매	개방
Mode 3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외국 기업의 현지법인 설립, 투자지분 참여	개방
Mode 4 (자연인 이동, Movement of Natural Persons)	전문가 채용, 전문가의 초빙 컨설팅 서비스	실제 개방된 상태

그러나 한·미 FTA 체결 논의 이전인 WTO체제에서도 <Mode

1>, <Mode 2>, <Mode 3>의 방식의 경우에 다음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 개방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FTA의 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IT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발주시 이를 수주하려는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입찰자격 요건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자 자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고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표 3-8> 한국의 GATS에서의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양허 분류

분 야	공급방식별 양허 여부	참고 사항	
		중국	일본
UN CPC : 841 컴퓨터 설비자문(Consultancy servi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Mode 1, 2, 3: ○	Mode 1: ○	Mode 1, 2, 3: ○
UN CPC : 842 소프트웨어 구현(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Mode 1, 2, 3: ○	Mode 1, 2: ○ Mode 3: △	Mode 1, 2, 3: ○
UN CPC : 843 데이터 프로세싱(Data processing services)	Mode 1, 2, 3: ○	Mode 1, 2, 3: ○	Mode 1, 2, 3: ○
UN CPC : 844 데이터베이스(Data base services)	Mode 1, 2, 3: ○	Mode 1, 2, 3: ○	Mode 1, 2, 3: ○
UN CPC : 845, 849 기타(Other)	Mode 1, 2, 3: ○	Mode 1, 2, 3: ○	Mode 1, 2, 3: ○

(주, ○는 전면개방, △는 부분개방, ×는 미개방을 의미, 일본은 컴퓨터예

약시스템만은 미개방, 공급방식 4의 경우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미개방, 자료: WTO(2005. 6. 24), TN/S/O/JPN/Rev.1를 이용하여 정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시작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념이 대두된 것이다. 초기에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hosting) 및 운영 관리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방식에서 출발하여, 인터넷을 통해 일대 다자간 제공방식의 이른바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방식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오라클(Oracle)사가 1999년부터 Oracle E-Business Suite를 발표하여 협업시스템 등이 제공 중에 있고, CRM 분야에서는 세일즈포스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오피스라이브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KT사의 비즈메카를 대표적인 SaaS로 볼 수 있다.

2. 서비스 영역의 주요 이슈

본 과제에서 다루는 서비스 영역은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영역이다. 시장 규모는 대폭 증가했고 증가 추세에 있는데 비해서 주요 이슈는 많이 부각되지 못한 상황이다.

먼저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시장 추이는 앞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수요자의 요구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 <표 3-9>는 미국의 SaaS 시장 규모에 대한 예측 자료이다.

<표 3-9> 미국의 SaaS 시장 규모 전망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oftware On-Demand (단위: 백만 달러)	매출액	1,999	2,557	3,299	4,050	4,881
	성장률(%)		28.9	28.0	22.8	20.5
호스티드 애플리케이션 관리(단위: 백만 달러)	매출액	1,400	1,795	2,325	2,962	3,526
	성장률(%)		28.2	29.5	27.4	19.0

(자료: IDC, 2006)

국내의 SaaS 시장은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음 <표 3-10>에서와 같이 연평균 20.8%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세계 ASP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오라클(Oracle)사 및 SAP 사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은 현재까지는 직접 국내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국내 사업자와 파트너 계약을 통해서 관련 ASP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세일즈포스닷컴은 2006년 국내 지사를 설립하고 있으며 유사 글로벌 기업들도 서서히 한국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표 3-10> 한국의 SaaS 시장 규모 전망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04-'09
Spending(십억원)	50.2	64.2	79.2	95.4	112.2	129.0	
성장률(%)	32.0	27.9	23.5	20.4	17.6	15.0	20.8

(자료: IDC, 2006)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라이브(office live)는 미국내 기업에만 제공되고 있으나 보안 문제의 극복 및 한글화를 통해서 국내에 진출할

예정이고, 반대로 한글과 컴퓨터사는 웹호스팅(web hosting) 및 비즈니스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싱크프리 오피스를, 안철수 연구소는 온라인 보안서비스나 온라인 게임보안 솔루션 등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아무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제품인지 아니면 서비스로 파악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일치된 견해는 없다. 그러나 서비스지향아키텍쳐(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나 웹2.0의 추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제품에서 서비스로 변동되고 있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다른 FTA 체결 내용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양허사항(일본에서는 컴퓨터예약시스템을 양허하지 않음)과 마찬가지로, 다음 <표 3-11>에서와 같이 특별한 유보항목이나 이슈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의 기술발전 추세 및 응용서비스의 출현 측면에서 장래의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1> 사업서비스에서 컴퓨터관련 서비스의 최근 FTA 체결 내역

컴퓨터관련 서비스 구분	한-칠레 FTA	미-칠레 FTA	미-호주 FTA
UN CPC : 841 컴퓨터 설비자문(Consultancy servi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한국, 칠레 : 유보 없음.	미국, 칠레: 유보 없음.	미국, 호주: 유보 없음.
UN CPC : 842 소프트웨어 구현(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한국, 칠레 : 유보 없음.	미국, 칠레: 유보 없음.	미국, 호주: 유보 없음.
UN CPC : 843 데이터 프로세싱(Data processing services)	한국, 칠레 : 유보 없음.	미국, 칠레: 유보 없음.	미국, 호주: 유보 없음.
UN CPC : 844 데이터베이스(Data base services)	한국, 칠레 : 유보 없음.	미국, 칠레: 유보 없음.	미국, 호주: 유보 없음.
UN CPC : 845, 849 기타(Other)	한국, 칠레 : 유보 없음.	미국, 칠레: 유보 없음.	미국, 호주: 유보 없음.

(자료: 무역연구소, 미-칠레, 미-호주, 한-칠레 FTA의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2006, 보완정리)

3. 서비스 영역에서의 영향도 및 대책

IT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이미 상호 개방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한·미 FTA의 체결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반적으로는 서비스 영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바탕에는 고유의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기업의 급격한 진출로 우리나라 시

장의 장악이 쉽다는 결론도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나 IT서비스 영역에서는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확산추세가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서비스 수요자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지식역량의 집중이 요구되는 서비스 영역에서의 전략화를 추구하면서, 적극적인 기술력 및 투자를 전제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간에 어느 정도는 고착화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외국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해나갈 수 있는 기회 분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FTA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정부조달 영역 분석

1. 정부조달 영역의 범위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조달규모는 다음 <표 3-13>에서와 같이 3,468억 달러, 10,511천 건(2004년 기준)으로써, 건당 평균 계약규모는 3만 3천 달러 수준이다. 이 중에서 민수부문이 1,178억 달러, 국방조달이 2,289억 달러로 전체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각각 34.0%, 66.0%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방부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규모 증가율은 전년대비 금액기준 13.51%을 나타내고 있다.(임성주, KOTRA, 2005)

IT 부문만을 보면, 정부조달이 2006년 기준으로 약 1,02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이며, 이것은 연방정부에서 약 56%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약 44%로 구성된다. 연방정부만으로 좁혀서 보

면 2005년도에 622억 달러, 2006년에는 635억 달러, 그리고 2010년에는 914억 달러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의 IT예산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하여 317억 달러로서 전체 IT관련 정부조달 시장의 약 50%를 차지한다. 기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IT 시장 규모는 2006년 498억 달러, 그리고 2008년에는 598억 달러, 2011년에는 715억 달러로서 약 7.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FCW.COM, 2006.4.24).

<표 3-12> 미국연방정부의 IT 투자규모 예상액(2005~2007)

(단위: 백만 달러)

구분	FY 2005	FY 2006	FY 2007
국방성	31,530	31,662	30,710
기타 중앙정부 부처	30,698	31,869	33,137
연방정부 합계	62,228	63,531	63,847

(자료: Report on IT Spending for the Federal Government for FY 2005~2007, OMB, 2006. 3)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의 미국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규모는 다음 <표 3-13>과 같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있는 미국 정부기관(주외 주둔미군, 공관 등)을 통한 조달규모를 통해 아래와 같이 파악이 가능하며, 이중 일부는 현지기업을 통해 조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3> 미국 본토외(해외 및 미국령) 조달 실적 (2004년 기준)

국가	금액(Million $)	연방정부 조달총액 대비 비율(%)
영국	2,186	0.63
독일	1,127	0.32
일본	896	0.26
한국	893	0.26
캐나다	895	0.26
해외에서의 조달총액	27,627	7.97
연방정부 조달총액	346,768	

(자료: Federal Procurement Report FY 2004, KOTRA, 임성주, 2005, 재인용)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하면, 한국기업의 미국에 대한 정부조달 실적은 연간 10억 달러 내외로서, 전체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의 0.3%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05년도에 해외 수출액 중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파악된 평균 8.8%의 수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진출상황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정부조달 영역의 주요 이슈

가. 내국 기업 선호

미국의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단체 중의 하나인 미국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에서는 국내에서의 한 세미나에서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오픈소스(open source) 기반 제품을 선호하는 입법안을 개정한 것에 대해 정부 조달 시장에서의 투명성 및 기술 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 유지에 대

한 주장을 폈다.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GS(good software)인증 우선구매제도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이 미국 소프트웨어기업의 정부조달 시장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와 같은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준수를 보장하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연방정부의 조달청(GSA)에서 수행하고 있는 IT 부문의 조달에서는 연방조달국(Federal Supply Service)의 GWAC(Government Wide Acquisition Contracts)에 의하면, 범정부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IT에 특화된 주문/인도 계약으로 예산처(OMB)의 사전승인을 거친 대표업체만 GWAC계약이 가능하다. 정부조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인 안보를 이유로 WTO 정부조달 협정에 다수의 예외를 두어 외국 기업의 참가를 막는 것도 무역장벽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이슈들은 미국의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5]을 포함해서 제도적인 무역장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 FTA 적용범위

---

5) 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25장(Foreign Acquisition)은 총 10개의 Subpart로 구성되며, 이중 Subpart 25.1(Buy American Act - Supplies), Subpart 25.2 (Buy American Act-Construction Materials), Sub 25.4 (Trade Agreement) 등이 핵심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여기에서 Buy American Act의 내용은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것이나, Trade Agreement 협정국, 최빈국 등에 대해서는 동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 (WTO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의거 동 조항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음. 또한 무역협정에 의한 외국물품 구매 (subpart 25.4 - Trade Agreements)의 허용 규정에서 미국은 WTO정부구매 협정에 87개 연방 정부기관 및 37개 주 산하 기관을 양허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경우 외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제품과 서비스는 193,000달러 이상 건설계약은 7,407,000달러 이상 건에 대해 Buy American Act 면제하며, FTA 체결시 체결당사자 국가마다 이 하한선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미국내 50개 주정부는 서로 독립된 국가와 같이 나름대로의 규칙과 독자적인 정책에 따라서 구매절차가 다르다. 다만 대부분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들이 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FTA 체결 국가의 입찰자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산 우선구매제도(Buy American Act) 및 중소기업 제품 쿼터제(Small Business Act)와 같은 정부의 구매정책을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WTO/FTA 정부조달협정에 추인이 지방정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4> 미국의 WTO/FTA 정부조달협정 추인 주(州) 현황

구분	WTO GPA	미칠레 FTA	미싱가폴 FTA	미호주 FTA	미캐나다 FTA	미온두라스 FTA
추인된 주	37	37	37	27	22	16
추인안된 주	1	1	1	12	16	22

(자료: WTO GPA US Annex 2)

다. 기술중립성과 개방형표준

정부조달에서 기술중립성이나 개방형 표준과 관련된 정책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다음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중립성은 주장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른 개념을 제기하고 있어 개념 자체가 모호한 형편이다. 미국-호주 FTA협정에서는 기술선택에서의 유연성을

합법적 공공정책의 수단으로 강조하여 특히 통신서비스 등에서 자율적 기술표준 선택을 기술중립성으로 반영하고 있고, 미국-오만 FTA와 미국-칠레간 FTA에서도 정보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상호접속을 위한 특정 표준 또는 기술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단일표준화 조치에 대해서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표 3-15> 기술중립성에 대한 개념의 차이

기 관	내 용	비 고
미 무역대표부	WTO 체제하에서 비차별 개념,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대우 지위와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서비스 및 무역, 정부구매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개념	
OECD	플랫폼 중립성의 정책적 도구로서 인식하고, 상호 표준경쟁의 촉진, 특정 플랫폼의 고착화(lock-in) 방지	
미 컴퓨터기술산업협회	정부에서는 상호운영성 및 개방형 표준을 촉진시키며, 특정한 SW 솔루션 혹은 라이선스모델 정책을 회피할 것을 주장	

그러나 정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구매정책은 시장 흐름 및 구매자의 수용태도 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은 경쟁을 통한 표준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3-16>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외국 정부에서도 개방형 표준에 대한 공급정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간접적으로 권고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표 3-16> 개방형 표준에 대한 지원정책 사례

구분	내 용	비 고
EU	-상호운영성 프레임워크: 정부가 채택하는 기본적인 표준, 정책, 가이드라인, 절차,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G2C 및 G2B 데이터 교환을 위한 서비스에 eLink 규격을 적용 -잠정표준(anticipatory standard) 제정: 정부에서 경쟁이전 단계에 잠정표준화의 단계 및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시험에서는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중요시함	
네덜란드	2003년부터 개방형 표준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표준화 기구와 표준화 포럼을 설립	
미메사추세츠주정부	2004년 1월 정보기술국(IT division)에서 산업표준기술을 사용하고, 신규프로젝트에서는 개방형 소스를 고려하도록 하는 ODF(open document format)정책을 수립	
일본정부	개방형 표준 및 개방형 다큐먼트포맷이 정부 조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정부조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고, 상호운용성을 권고함.	
UN	UN이 발표한 정책권고안에는 회원국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OSS솔루션의 데이터저장소에 상호운용성을 강조하는 개방형 표준인 개방형 다큐먼트와 개방형 파일포맷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함	

개방형표준(open standard)은 궁극적으로 ICT 생태계를 통합시키며 상호운용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며, 성공적인 개방환경(open environment)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6] 하지만, 개방형표준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다

6) Roadmap for open ICT ecosystems,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at Harvard Law School, 2006.5.17.

른 관점의 개념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방식과 배포방식에 있어서 상용 소프트웨어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개방형표준을 촉진하거나 만족시키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FTA 협상과정에서 두 이슈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라. 국제입찰 적용범위

정부조달에서 국제입찰에 적용하는 하한선도 이슈중의 하나이다. 미국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정부조달 분야와 관련,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건설서비스 분야 양허 하한선 하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약 24개의 정부투자기관이 국제입찰에 부쳐야 하는 조달의 범위(개방하한금액)를 두고 있다. 하한선은 2년마다 조정된다. 현재는 중앙정부의 경우 물품·용역 2억 1,000만원이다. 또 ▲지방정부는 물품·용역 3억 3,000만원 ▲정부투자기관 물품·용역 7억 5,000만원 등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하한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 정부조달 영역에서의 영향도 및 대책

가. 자국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 제도 이슈

정부조달 시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중의 하나는 법, 제도적인 무역 진입 장벽이다. 미국은 외국산 조달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Buy American Act, 연방획득규정 제25장)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및 양자 협정(FTA) 체결국과 최빈국 등에 대해서는 다음 <표 3-17>과 같은 하한선을 기준으로 하한금액 이상의 조달 건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정부조달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WTO GPA에 의거하여 FTA 체결과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정부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한 상태이다.

<표 3-17> 무역협정에 따른 Buy American Act 미적용 하한선

(단위: 달러)

무역협정		물품공급계약	서비스계약	건설계약
WTO GPA		193,000	193,000	7,407,000
FTA	NAFTA			
	- Canada	25,000	64,786	8,422,165
	- Mexico	64,786	64,786	8,422,165
	칠레 FTA	64,786	64,786	7,407,000
	싱가포르 FTA	64,786	64,786	7,407,000
	호주 FTA	64,786	64,786	7,407,000
	이스라엘 FTA	50,000		

하지만 신규 기업이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몇 가지 장벽이 작용해 현실적인 진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무역연구소, 2006). 즉, 컨트렉트 비히클(Contract Vehicle)은 특정 범위의 서비스나 물품을 일정기간에 걸쳐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전통적 입찰 방식 과정에서의 업무 중복과 시간/비용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컨트렉트 비히클을 획득하는 업체는 소수의 유자격 업체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참여자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또한 과거 비즈니스 실적(Track Record)으로서, 미 연방정부가 응찰업체에 미국 내 과거 일정 기간의 비즈니스 실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신규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미 국방부의 경우 최저 입찰가 제시 국내 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50%의 가격 상향 조정이 의무화(미국의 연방구매시행령에 따르면 FTA 등 무역 규정 내 비양허 물품을 조달할 경우 최저 입찰가 제시 업체가 해외업체이고, 두 번째가 국내 업체일 경우 6~12% 가격 상향 조정 의무를 부과함)되어 있고, 조달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의 보증서 등을 요구함으로써 엄격히 Buy American Act를 적용하고 있다. 미 국방부와 조달 MOU를 체결한 21개국에 한해서는 미국산 제품과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 경쟁에 참여가 가능토록 우대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MOU 미체결국으로, 선박, 전기/전자 부품, 섬유/의류, 철강 제품 등 높은 제품 경쟁력을 구비한 우리나라 품목이 전체 미 연방조달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부 조달 시장에 참여할 기회는 희박한 상황이다.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은 업체 입장에서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납품이 가능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의 납품 가격 인상을 보장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매우 유리한 시장이다. WTO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협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여기에 양허를 승인한 87개 연방정부기관과 37개 주정부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 기회는 보장되어 있으나, 실질적 진입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한·미 FTA를 통해 조달 참여 하한 금액을 하향 조정, 더 많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기관에 대한 양허기관의 범위 확대, WTO/GPA 양허 적용품목의 확대, 국방조달의 MOU 체결, 과거 참여실적 제약의 완화 등을 요구함으로써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음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업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참조해볼 때, WTO 정부조달 협정에서 비차별 대우에 대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등을 이유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두어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 제도적 장벽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표 3-18> 한 · 미 FTA 체결에 따른 소프트웨어업체 의견

법 · 제도 관련 개선 및 요구사항
내용
o 미국의 고객사 시스템 구축으로 인력소싱 공급에 관해 인력파견이 미국내 불법노동으로 간주되므로 Working Visa를 받는 절차와 기간이 아웃소싱 사업수행을 할 수 있게 비자문제의 개선 요구. o 예를 들면, 경력이 4~5년 된 개발자들도 당사로 이적한지 1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비자를 허용하지 않고, 또 미국 업체와의 계약 여부를 따지는 등등 이러한 이유로 인해 비자가 없는 인력은 미국 국경 인근 캐나다에서 원격 개발을 진행 한바 있음
기술인력 상호교류(자격의 상호인정)관련 개선 및 요구사항
o 현재 MOUS와 같은 미국 기준의 표준 자격증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에서 부여하는 유사한 형태의 공인 자격증 제도도 미국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o 미국 사람은 한국비자 없이 한달간 국내체류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중남미 출장을 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해서 가능 경우(당일 Transit)도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함.
미국의 요구(영구 무관세와 포괄적인 비차별 조항:내국민 및 최혜국) 관련 개선 및 요구사항
o 비차별 조항과 관련해서는 미국 역시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이나 설비, 기관 등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만을 고용하는 등의 차별적 조항을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조건부 수용, 혹은 조건부 허용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o e-Government, 전자결제,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최근의 디지털 환경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과거와 같은 단품

소프트웨어를 훨씬 넘어서 정부 및 사회 인프라를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미국 요구사항 허용 시 한국의 요구사항
o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언제든지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한 · 미 FTA 관련 업계의 기타 의견
o 미국은 연방 및 주 또는 하부행정기관을 통한 정부구매시 "Buy America"법에 의해 외국기업을 차별하고 있음 o 특히, 정부조달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입찰 배제, 로컬 업체에 대한 가격특혜 제공 등의 차별은 개선해야 함.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6, 재정리 및 보완)

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인적자원 교류에서의 불균형이 제도적으로 심각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미국기업 직원의 경우 한국비자 없이도 한 달간 국내체류가 가능하지만 미국 고객사의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 인력을 파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다.

미국 고객사 시스템 구축으로 인력을 파견할 때 비자가 없으면 미국 내에서 불법 노동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워킹 비자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자 기간도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국내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통상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비자 기간은 겨우 6개월에 불과하여 최악의 경우 비자가 없는 인력은 미국 국경 인근 캐나다에서 원격 개발을 진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7]

또한 미국 SW 업계에는 여러 가지 자격증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한국 국가공인 자격증은 미국 현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상호

7) 한 · 미 FTA 체결관련 SW산업계 설문조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6.06.

주의에 입각해 국내에서 인정하는 유사 형태의 국가공인자격이 미국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기술사(PE; Professional Engineer)와 우리나라의 기술사 제도는 명칭은 유사하지만, 자격취득에 요건인 경력 년 수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정부조달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내외국민의 구분없이 동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나. 정부조달의 적용범위 이슈

FTA 양허대상기관을 미국의 경우에 87개 연방정부 기관 및 FTA 협정에 승인한 일부 주정부로 제한하고 있어, 대다수의 지방정부는 미국산 우선구매제도(Buy American Act)의 영향력 하에 있다. 따라서 협정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가능한 많은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적용범위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국제입찰의 하한선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정부 사용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입법화 이슈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에서는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품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 및 규정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호주 FTA, 제 17.4.9조 참조[8])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용중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8) Chapter 17 4.9. Each Party shall provide appropriate laws, orders, regulations, government issued guidelines, or administrative or executive decrees providing that its central government agencies not use infringing computer software and only use computer software as authorised in the relevant licence. These measures shall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the acquisition

입수 및 유지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목록 및 라이선스에 관한 목록을 체계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 기술중립성 및 표준선택의 이슈

미국에서는 표준이 무역에 대한 장애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 즉 사용기술의 선택에서 유연성을 강조한다. 미국 정부가 최근 WTO/DDA 협상과 신규 체결한 FTA에서 '기술표준의 민간자율선택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신규 국제규범 제정을 통한 포괄적 국면 전환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기술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주요 분야는 우리 정부의 통신정책이다. 기술표준 문제와 관련하여 무선인터넷플랫폼(WIPI)을 상호접속 기준으로 채택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는 WTO의 상품협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고, 동 계획 시행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며, 기술표준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율적으로 채택할 성질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 계획이 WTO의 서비스 협정에 따라 합법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허용되는 정당한 조치이며, 기술표준 채택문제는 각국 정부의 규제철학과 시장여건에 따른 고유영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한영, 2003).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통신서비스에서의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은 조달 주체인 정부의 재량권 사항이며, 상호운영성 및 상호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채택은 합법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사항으로 인식해왔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와 같이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특히 정부 조달 영역에서 기술중립성이나 표준선택 문제는 교역에서 이슈가 될 가능

---

and management of software for such government use and may take the form of procedures such as those under which an agency prepares and maintains inventories of software present on the agency's computers and inventories of software licenses. (미.호주 FTA)

성이 매우 높다. 소프트웨어가 제품에서 서비스화 되는 추세에서 다른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사용될 때 높은 가치를 나타내는 이른바 “시스템 재화”로서 사용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사용자의 효능이 증가하는 이른 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되며, 특정 플랫폼에 사용자가 쏠리는 쏠림현상이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고착화되면 다른 기술경로로의 전환 및 기술적 다양성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PC에서의 운영체제로서 MS windows가 99%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기술중립성과 관련하여 상호운영성 확보, 민간의 자율적 표준 선택, 기술발전과 협정의 권리 및 의무와의 무관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고착화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기술의 다양성과 동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제품개발에서 국제 표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표준과 관련된 국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필요한 분야에서는 다자간의 공동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제5절 소프트웨어산업 전문가의 한 · 미 FTA 관련 의견조사

1. 전문가의견 조사 개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그 협상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불명확한 협상결과를 예측하여 수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종협상결과를 예측하기 보다는 현재 한국과 미국 간 소프트웨어 교역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와 해결방안에 관하여 현업전문가들 의견을 심층 인

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개방적 구조의 특성상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은 한·미 FTA의 영향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의미있는 수준의 소프트웨어 교역을 수행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업체도 극히 적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모집단을 확보할 수 없었고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보고서의 부록에 추가하였다.

소프트웨어 산업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현재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사업 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의견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질문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구조적인터뷰(structured interview)기법을 사용하였다. 구조화된 인터뷰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응답업체 일반현황, 미국 진출(진출 가능 포함) 사업분야, 미국과의 소프트웨어 교역에 있어서 장애요소, 미국 진출 시 불이익(불리)한 경험/사례, 한·미 FTA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의견,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 등을 포함하였다.

2.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

인터뷰에 응한 산업전문가는 현재 미국에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현재 진출해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SW패키지 개발판매, 컴퓨터 관련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 모든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진출한 사업영역에서 향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오히려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진출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장애요인의 감소,

미국 수입제품(서비스) 가격의 인하, 시장통합, 인력수급, 자원공급 용이 등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였다. 한 · 미 FTA 체결 이후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을 예상하였다.

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기업이 경험한 장애요인은 크게 법.제도 측면과 인적교류에 관한 이슈로 구분할 수 있다. 중소기업법, 미국산우선구매제도(Buy American Act) 등과 같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는 한국 기업이 미국 공공IT시장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미 국방조달 시장의 경우, 상호조달협정(MOU)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미체결국가로서 국내기업의 미국 국방조달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있는 실정이다.

까다로운 미국비자발급제도는 국내 IT서비스 인력의 미국 파견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인력파견의 어려움은 날로 서비스화되어 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상 향후 더욱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기업의 IT전문가들은 국내입국 및 업무활동에 특별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은 반면 국내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연구 지원 비용, 해외 마케팅 비용, 제품 패키지 성숙을 위한 가이드 및 연구 결과 발표, 국내 소프트웨어를 기업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 등의 정책제안을 했다.

이와 같은 조사내용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실시한(2006. 5)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통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9> 한 · 미 FTA 체결에 따른 소프트웨어업체의 서술식 의견

법・제도 관련 개선 및 요구사항	
내용	비고
o 미국에서 온라인서비스하고 있는 NCsoft 온라인 게임의 로열티 수입에 대해 Withholding Tax를 10%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세 인하 가능 여부	
o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미국의 경우 계약금액의 약 10%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수령하게 됨계	계약금액이 몇 십억이면 몇 억원 정도가 세금인데 국내벤처 기업의 경우 그 만한 매출이 없어서 내야 할 법인세가 그 만큼 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Refund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비관세(통관절차 지연 등)관련 개선 및 요구사항	
게임 등급 심사시 자국 온라인게임에 대한 저연령 등급 분류 요구에 대한 대응 필요	NCsoft가 개발/퍼블리싱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2의 게임 등급은 국내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반면, 미국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ESRB)로부터는 T(Teen)-Violence 등급을 받아 13세 이상의 청소년이면 플레이 가능
따라서 역으로 미국에서 저연령층이 플레이 가능한 등급의 온라인 게임에 대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등급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역으로 미국기업의 반발 예상	

o WTO에서 온라인게임을 “레크레이션 서비스”로 분류하여 온라인 도박을 제외한 온라인 게임에 대한 무역장벽을 철폐하려고 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부분적으로 온라인 경마게임을 허용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습득한 사이버 머니에 대해 경품 및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는 형태의 사이트(www.pogo.com, EA가 운영) 존재 o 국내법상 제한이 되는 이러한 사업모델에 대해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5, 재정리 및 보완)

제4장 저작권 관련 쟁점사항과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영향도 분석

1995년에 발효된 TRIPs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서는 WTO 회원국 간의 합의 사항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로서 취급하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FTA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을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으며, 미국의 서비스 부분의 수출에 있어서도 하나의 큰 범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서비스 관련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이고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9] 성장동력이면서 수출주력산업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2002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핵심(core) 저작권 사업은 미국 GDP의 약 6%($626.6 백만)를 차지하고, 이와 같은 전체(total) 저작권 산업의 규모는 약 12%($1.25 조)를 차지한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핵심 저작권 산업에서의 실제 성장률은 매년 3.51%였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의 GDP에 대한 실제 매년의 성장률인 2.40%를 46.3% 초과했다.[10]

여기에서 핵심(core) 저작권 산업이란 저작물을 생산(produce)하고 유통(distribute)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인 저작권 관련 산업이고, 전체(total) 저작권 산업은 핵심(core), 부분(partial), 비전용 지원

9) 미국의 수출 중 서비스 분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Royalties and license fees”이다. <http://www.bea.gov/bea/dn/home/gdp.htm>에서 관련 자료 참조.

10) Stephen E. Siwek,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Economy: The 2004 Report,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i-vi (2004). <http://www.iipa.com/pdf/2004_SIWEK_FULL.pdf>

(non-dedicated support) 및 상호의존적 영역(interdependent sectors)을 포함한다. 이중에서 핵심 저작권 산업 분야는 신문, 서적 출판, 녹음(recording), 음악(music) 및 잡지(periodicals), 동영상(motion pictures),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11]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사용자수도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12] 뿐만 아니라 2005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국가적인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13]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주요 수출국으로 삼고 있는 상황[14]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관련법에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15]

현재 미국을 필두로 EU,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지적재산권을 점차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및

---

11) Stephen E. Siwek, 전게논문, iii.

12) 한국인터넷진흥원(http://isis.nida.or.kr)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수는 2004년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인도에 이어 31,580명으로 7위를 유지하고 있고, 2005년 12월 인터넷 사용자수의 통계에 따르면 33,010명으로 전체 인구의 72.8%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주문정 · 방은주, “SW 육성에 국가역량 집중”, 전자신문, 2005. 12 .02.

14) 미국과 일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법무팀이 활성화되어 있다.

15) 현재 저작권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에 관하여는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었으나 일부는 미국 법률에 비해 간략한 내용으로 도입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도입이 되지 않기도 하였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사안에 관하여는 비교적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BT(Biology Technology) 산업의 발전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및 제도가 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절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17개 분과 중 지적재산권 부문[16]의 협상안에서 저작권에 관련된 두드러진 쟁점사항과 고려사항들에 관하여 분석한다.

주요 쟁점사항은 크게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저작권 보호기간 등의 4개 항목으로 정리된다.

<표 4-1> 저작권 관련 주요 이슈별 개념과 예상 쟁점

분류	개념	FTA 예상 쟁점
일시적 저장	○ 디지털저작물이 RAM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나 전원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현상	① 복제에 포섭 및 복제권 수용여부 ② 포괄적 면책(예외) 규정 적용여부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물의 무단복제 등의 불법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수단 또는 장치를 포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라고 함 ○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통제만 규정하고 있음. 단 프로그램보호법은 이용통제 및 접근 통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① 접근통제 포함 여부 ② 무력화 자체의 금지 여부 ③ 규정 방식(저작권 보호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규정 여부) ④ 기술적 보호조치의 규정 위반에 대한 예외 범위 및 규정 방식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	① 면책 대상을 유형별로 특정하고 각 유형별 면책 요건을 구체화할 것인지 여부

16)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해서는 국제조약,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 도메인이름, 저작권, 공연자 및 음반저작자,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송 위성신호, 디자인, 특허, 집행 등에 관련된 협상이 진행된다.

	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타인의 저작물침해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정된 지위보장을 마련한 규정	② 침해자의 정보제공 의무부과 여부
저작권 보호기간	○ 보호기간은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 사후 50년인 보호기간을 사후 70년간으로 연장할 것인지 여부

제1절 일시적 저장

1. 개념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y) 또는 일시적 저장(temporary storage)은 컴퓨터의 사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특정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가 주로 RAM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17]

이러한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지털 저작물을 컴퓨터에서 실행(프로그램 구동 또는 인스톨 등), 검색, 열람(브라우징), 전송시 주기억장치(RAM)에서 발생되며, 그리고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전송시 버퍼에 일시적 저장, 송신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및 캐싱에서도 발생된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 서비스제공자

17)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효과적 S/W보호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하), 정보통신부, 2005, 324면. ; 또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저장되는 것으로도 표현되나 같은 의미로 여겨지며 이에 대해서는,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2005, 280면 참조.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형태로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컴퓨터의 RAM에서도 발생된다.[18]

2. 주요 쟁점 사항 및 사례 분석

가. 미국이 맺은 FTA상의 규정

미국과 오만의 FTA 및 미국과 싱가포르의 FTA에는 "각국은 저작자, 공연자, 음반 제작자 및 그들의 승계인이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로든 영구적이건 일시적이건 그들의 작품, 공연,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19]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미국과 호주의 FTA에도 규정의 구문형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내용[20]이 규정되어 있다. 즉, 미국은 FTA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는 규정을 협정문에 규정하여 두고 있다.

---

18)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전게보고서, 325-357면.

19) 미국-오만 FTA 제15.4조 제1항.
ARTICLE 15.4: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all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in any manner or form, permanent or temporary (including temporary storage in electronic form).

20) 미국-호주 FTA 제17.4조 제1항. ARTICLE 17.4 : COPYRIGHT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following have th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all reproductions, in any manner or form, permanent or temporary (including temporary storage in material form):
(a) authors, in respect of their works;
(b) performers, in respect of their performances; and
(c) producers of phonograms, in respect of their phonograms.

나. 법률 규정의 비교 및 분석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의 침해로 보는지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간접적인 규정을 둔 상태이며,[21] 독일[22]이나 호주에서는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수리,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상의 일시적 복제, 적법한 이용과정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streaming) 과정에서 주기억장치(RAM)에 일시적 저장이 수반되며, 하나의 PC를 2인 이상이 사용하도록 하는 멀티 PC 환경에서도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정책에서 의도한 바와 달리 각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일시적 복제가 발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 주기억장치(RAM)에의 복제와 같은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가 복제권의 규율 대상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23] 이러한 분야에 일반적인 인지도도 낮은 상황이다. 미국의 저작권법도 일시적 복제가 복제권 침해인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24]

---

21) 미국 저작권법 제117조(c)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일시적 복제행위를 면책시키고, 제512조(a)가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운영상 제3자간의 송신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복제행위를 면책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일시적 복제도 복제임을 밝히고 있다.

22) 독일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있어서는 RAM으로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69c조 제11항 제1호에 의하여 복제로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예외로서 서비스제공자 시스템상의 일시적 복제, 적법한 이용과정의 일시적 복제를 규정하고 있다.

23)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조 제14호에서 복제의 정의에 대해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시적 저장' 개념의 포함 여부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24) 미국 저작권법 제117조(c), 제512조(a) 참조.

<표 4-2> 일시적 저장 관련 한미 규정 비교

구분	국내법 규정	미국 저작권법 규정
내용	○ 저작권법 : 명시적 규정 없음 ○ 프로그램보호법 : 명시적 규정 없음	○ 직접 규정은 없음(간접적 인정) ○ 제117조(c), 제512조(a)에서 예외를 규정함(유지보수시,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제한 규정중에서 일시적 통신 등에서 일시적 복제를 침해 예외로 인정)

<표 4-3> 일시적 저장 관련 해외 입법 사례

구분	내용
WCT	-베른협약 복제규정에 일시적 복제가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유럽연합 지침	-1991년에 채택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대한 EU 지침에서는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의 개념에 포함하였으며, 1996년 DB의 법적 보호에 대한 EU지침에서도 마찬가지였음. 그러나 적법한 이용, 전송과정에서의 복제 등에 대한 예외가 있었음
독일 저작권법	-일시적 복제를 복제로 명명하였으나, 폭넓은 면책범위를 규정함
호주 저작권법	-간접적으로 일시적 복제를 인정은 하였으나,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여 저작권침해로 규정하지는 않음
미 - 칠레 FTA	-다른 나라와의 FTA와 유사하지만 정당한 이용중에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에 관련하여 포괄적인 예외를 허용하였음
미-싱가폴 FTA	-저작물의 일시적인 복제, 예를 들면 컴퓨터의 RAM에서의 복제도 저작권을 구성하는 복제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제16.4조 제1항)
미 - 호주 FTA	-임시 및 일시적 복제라도 사본으로 보고 복제권 적용(제17.4조 제1항)

다. 주요 쟁점 사항

미국은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일시적 복제의 개념을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기술(IT) 발달로 저작물을 매체에 영구히 보존시키지 않고,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이용하는 형태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데서 제기되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미 FTA에 있어서의 쟁점 사항 또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라. 찬반론

1) 반대론

먼저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법상의 침해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보면 ①공개된 웹사이트에서와 같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저작권자에 의해 통제가능하다는 점, ②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이 저작권자에게 급속히 기운다는 점, ③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는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관리정보, 전송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보호조치라는 점, ④일시적 복제가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부수적인 현상이며 독립적 경제 가치가 없다는 점, ⑤일시적 복제를 복제로 인정하면 로열티(royalty)를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점, ⑥일시적 복제를 인정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을 창작할 동기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상관이 없다는 점, ⑦일시적 복제의 인정은 1980년대 초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서 비롯되어서 일반저작물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약하다는 점 등

에서 제기되고 있다.[25]

2) 찬성론

그러나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①일시적 복제도 영구적인 복제물과 같이 저작물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 ②디지털 환경 특히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일시적 복제에 의한 저작물 이용이 주된 이용형태가 되기 때문에 개념의 재수정이 필요하다는 점, ③기술발전에 따라서 원칙적인 차원에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 개념의 재정립에 따른 결과라는 점, ④창작의 유인이 확보되어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복제권을 주장하고 있다.[26]

3. 고려사항

미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일시적 저장을 수용하여 저작권자를 보호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27]

---

25) 이와 같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부정효과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지재권공동대책위, 한미 FTA에 대한 의견서, 2006, 27-28면 참조.

26) 긍정·부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대희, 일시적 복제의 입법방안에 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5, 8-14면;148-150면 참조.

27) 미-싱 FTA 제16.4조 제1항 - 각국은 저작자, 공연자, 음반 제작자 및 그들의 승계인이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로이든 영구적이건 일시적이건 모든 형태의 복제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미-호주 FTA 제17.4조 제1항 - 각 당사국은 다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들이 (자료 형식의 일시적인 보관을 포함하여) 특정한 방식 및 형식으로 또는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모든 복제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복제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반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일시적 복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산업의 문화질서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 예외나(적법한 콘텐츠 사용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복제 등), 면책범위를 규정(유지 · 보수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제한)하여, 향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적어도 정당한 사용자 및 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나 책임이 부과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이외에 문제가 될 만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일시적 저장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면 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인터넷 관련 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ASP 업체나 음원 서비스 업체들과 관련된 사용자 및 사업자에게는 특정한 경우에 의무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합의를 만들어 나간다면 합리적인 해결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

1. 개념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란 저작권법등에서 보호하는 권리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기술

(a) 자신의 작품과 관련하여 그 작가들
(b) 자신의 공연과 관련하여 그 공연가들
(c) 자신의 음반과 관련하여 그 음반 제작자들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기술적 보호조치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저작권자들로부터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권리침해 시 사후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환경에서는 복제의 용이성,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 저렴한 복제비용 등으로 인해서, 침해는 매우 쉽지만, 반면에 권리구제는 극히 어렵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저작물의 보호라는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었다.[28]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장착하는 행위는 법이 예정한 사항은 아니었고, 단지 저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수호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저작권자들이 부가한 기술적 조치들을 해제하여 저작물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논의되었다.[29]

그 결과 WIPO 신조약인 저작권조약(‘WCT’), 실연・음반조약(‘WPPT’)을 비롯하여, 미국의 밀레니엄저작권법(‘DMCA’), EU의 “정보화 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인접권의 일정한 측면에서의 조화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저작권지침’), 일본의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규제’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8) 이상정 외,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연구」, 문화관광부, 1999. 12. 2, 7면.

29) 강태욱, PS2- chip 사건을 통해 바라본 기술적조치의 보호범위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과 신패러다임-법적・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디지털법연구소, 2006. 6. 30, 5면.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크게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와 이용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2개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물에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용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는 복제, 전송 등 저작권의 침해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하의 도표와 같다.

<표 4-4> 기술적 보호조치의 구분

구분	이용통제 기술조치	접근통제 기술조치
내용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전송 등과 같은 저작권의 각각의 지분권의 규율 대상이 되는 이용행위에 대한 통제를 위한 기술조치	저작물을 수록하는 매체 또는 저작물의 내용에의 접근자체를 통제하는 기술조치
예시	직렬복제관리(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복제세대관리시스템(copy generation management system), 매크로비전(macrovision) 등	암호화기술(encription), 스크램블링기술(scrambling) 등

2. 주요 쟁점 사항 및 사례 분석

가. 미국이 맺은 FTA상의 규정

미국은 WCT, WPPT 등의 조약의 체결 과정 및 체결 후에도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대상에 이용통제 뿐만 아니라 접근통제도 포함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FTA를 맺을 때에도 상대국에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협정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

이 일관적인 태도였다.

따라서 미국은 FTA의 협정문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자국의 DMCA의 규정과 동일한 방식과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미국-오만 FTA(제15.4조 제7항 (f))와 미국-싱가포르 FTA(제17.4조 제7항 (b))에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란, 기능하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다른 대상(subject matter)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특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특정 기술, 장치 및 구성물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률 규정의 비교 및 분석

특히 미국의 DMCA는 연방저작권법 제1201조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연방저작권법 제1201조에 의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ⅰ) 저작물에 대한 "접근 통제형 보호조치"와 ⅱ) "복제 통제형 보호조치"로 구분된다. 이를 기준으로 제1201조는 접근통제에 대해서는 회피규제와 거래규제를 규정하고, 복제통제에 대해서는 거래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5 참조).

<표 4- 5>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201조의 기본 구조

구분	저작물의 접근 통제	저작물의 복제통제
회피 규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1201(a)(1)]	없음
거래 규제	접근 통제를 무력화하는 기술 등의 거래 금지[§1201(a)(2)]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기술 등의 거래금지[§1201(b)]

* 자료: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480면.

이러한 미국 저작권법과는 달리,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법에 의한 권리를 수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기술적 보호조치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9호),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비, 장치, 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의 양도, 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제30조 제1, 2항)고 규정하고 있다.[30]

또한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하고(제2조 2호), 한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그 예비적 행위인 무력화 장치를 제조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권리의 침해로 보는 침해간주규정을 두어,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31]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30) 이에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46조). 위 처벌 규정중 기술적 보호조치를 직접 침해한 행위(제1항)는 친고죄로 하고, 무력화 장치를 제조 등을 한 경우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제48조).

31) '주된 목적'(principal purpose)의 기준은 무력화 목적이 최소한 절반 이상 되어야 무력화도구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및 EU가 '일차적 목적'(primary purpose)기준에 의하여 특정한 도구 등의 목적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기술조치의 우회 목적인 경우에 우회도구로 판정되는 데에 비하여 완화된 것이다(임원선, 전게논문, 30면).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2조 제2항).[32]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프로그램저작물에의 접근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한다.[33] 그러나 이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들 중 '암호화'의 경우는 접근통제기술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하고,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제한 및 예외사유와는 달리 무력화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접근통제도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34] 그러나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35]

이상과 같이 미국저작권법과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내지는 프로그램보호법 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계된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 <표 4-6>에서와 같다.

---

32) 또한 기술적보호조치를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 2항을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제98조 제5호), 위 처벌 규정은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33)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육법사, 2003. 9, 517면.
34) 강태욱, 전게논문, 15~16면.
35) 이대희, 전게서, 519면.

<표 4-6> 기술적 보호조치 이슈 관련 한미 규정 비교

구분	국내법 규정	미국 저작권법 규정
내용	○ 저작권법 - 제2조제20호(정의) - 제92조제2항(침해로 보는 행위) - 제99조(부정발행등의 죄) ○ 프로그램보호법 - 제2조제9호(정의) - 제30조(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등의 금지) - 제46조(벌칙)	○ 연방 저작권법 제1201조 (i)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1201(a)(1)] (ii)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도구 거래금지[§1201(a)(2)] (iii) 저작권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도구 거래금지[§1201(b)] (iv) 이러한 금지에 대한 예외 [§1201(d)-(j)] 저작권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규정 없음.
이용통제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없음
이용통제조치 거래행위	금지	금지
접근통제조치 무력화	규정없음	금지
접근통제조치 거래행위	규정없음	금지
예외 규정	동일성 유지권의 예외,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의 멸실/훼손 등에 대비한 복제, 호환성 유지, 프로그램 수정/보완의 요청, 연구/교육 목적의 암호화분석 등	비영리도서관, 기록보관소, 교육기관에서의 예외, 법집행, 역분석, 암호연구, 보안성시험, 미성년접근금지, 개인정보보호 등 7개항

따라서 미국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와 관련하여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직접 우회하는 행위와 이를 지원하는 행위, 우

회행위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를 제조, 수입 또는 공개제의하는 행위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통제적 기술조치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우회행위는 금지하지 않고, 간접적인 기술이나 서비스의 제조 또는 제공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은 결국 자국과 같이 접근통제형 기술조치의 보호를 우리에게 강요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접근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4-7> 기술적 보호조치 이슈 관련 해외 입법 사례

구분	내용
WCT & WPPT (199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되었으며, 저작물을 기술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함 -접근통제적 기술조치도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제외되었는지 양설이 있음
유럽연합 지침	-접근통제적 기술조치까지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덴마크에서는 이용통제적 기술조치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
덴마아크	이용통제적 기술조치만을 보호대상으로함
미-싱가폴 FTA (2004. 1.1 발효)	-각 당사국은 비영리도서관, 기록보관소, 교육기관이나 비상업적 공영방송국 이외의 자(person)가 의도적이며 상업적 이익 및 개인의 소득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해야 함(제16.4조 제7항) -대체로 TRIPs 협약과 동일
미-호주 FTA (2005. 1.1 발효)	-침해의 경우 침해물의 압류,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침해물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사법당국에 부여(제17.11.13조) -접근통제 직간접 우회금지, 이용통제 간접 우회금지, 기술보호 독립 규정, 다만, 다수의 예외 인정
미-바레인 FTA (2004. 9.14 체결)	-미국-호주FTA와 거의 동일. 다만, 접근통제적 기술조치를 직접 우회하는 것에 대해 민사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제14.4.7조)
기타	-접근통제적 기술조치를 명시적으로 보호: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파라과이,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EU 회원국 중 독일, 영국, 네덜란드, 헝가리 등은 EU 저작권 지침상의 표현을 대부분 그대로 차용함. access contro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접근통제적 기술조치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됨

상기 도표를 분석해 보면, WTC/WPPT, 유럽의 일부국가의 경우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미

국과 FTA를 체결한 대다수의 나라인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에 따라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까지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추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가 우리의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호주의 사례에서와 같이 최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예외규정을 통하여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주요 쟁점 사항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기술적 보호조치이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물의 이용자가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도 하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감시할 수도 있으며, 아예 이용방법을 정할 수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물의 통제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저작자 등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법적인 통제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기술에 의한 저작물의 관리를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의 출현 후, 디지털콘텐츠는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상업적 거래의 객체로 부각되고 있으며, 콘텐츠 제공자로서는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수익의 범위가 현저히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콘텐츠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기술인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이슈는 ⅰ) 보호대상의 측면에서 접근통제적 기술 조치를 포함하는지 여부, ⅱ) 보호범위의 면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 직접

적 우회행위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iii)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찬반론

국내 법률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상에서 접근통제의 포함여부에 관한 논란은 차치해 두더라도 접근통제를 완전히 기술적 보호조치의 규정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논란이 더욱 치열하다.[36]

1) 반대론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에 있어서 미국의 법률에 맞추어 기술적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저작권 보호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 미국의 규정은 이러한 정당한 사용을 보장할만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으며, 몇몇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까지 무분별하게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37]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이 ①WIPO의 요구나 다른 나라의 기술적 보

36)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 자체가 저작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규제로 인해 사용자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 자체에 관한 저작권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되었다.

37) 남희섭,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한미FTA 저작권 분야에 대한 입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2006. 5. 24, 33면. <http://nofta-ip.jinbo.net/>.

호조치 회피조항보다 과도하고, ②공정이용을 제한하며, ③연구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④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⑤기술발전과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한미 FTA에서 기술적보호조치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규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30]

2) 찬성론

찬성론 또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먼저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는 기술적 보호조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하게 보호하면서도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31]

그리고 디지털환경에서는 저작권이 매우 용이하게 침해되므로 저작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비밀번호나 암호화 등 이미 접근통제를 위한 많은 기술적 보호조치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관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시대에는 저작물의 이용행태가 물리적 복제물의 소유보다는 디지털 복제물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며, 접근통제의 인정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여러 혜택을 가져다주고, DRM, 자동화된 권리관리체계(automated rights system), 쉬링크랩 라이선스(shrink-wrap license) 등과 함께 사용되어 저작물의 효율적인 배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접근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는 쉬링크랩 라이선스 등 계약에 의하여 접근통제의 효과를 획득하려 할 것이라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접근권의 인정은 불가피하다는 주장[32]이 있다.[33]

---

30) 이은우,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미국 DMCA의 문제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6, 40-42면.

31) 최정환,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 토론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6, 52면.

3. 고려사항

미국 입장에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에 이용통제 이외에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조치도 포함시키는 것, 이러한 기술보호조치의 무력화의 책임을 저작권 침해 책임과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것,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미 FTA가 체결될 때, 접근통제적 기술조치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에도 예외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외사항을 열거하여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신중한 법률의 검토 및 공청회 등을 위해 호주의 사례에서와 같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34]

기술적 보호조치는 인터넷 및 컴퓨터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른

---

32) 이대희, 디지털환경에서의 접근권의 인정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제34호), 2004. 3, 125-126면.

33) 다만, 이 경우에도 접근권을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접근통제를 인정하는 경우의 장점 내지 혜택은 (저작물의 복제물의 소유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성숙된 디지털 환경 내지 디지털 시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도래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저작권에 대한 예외나 면제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에 보장되어 있던 일반인의 접근이 방해되지 않도록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려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34) 미국은 직접적인 우회행위와 더불어 간접적인 우회행위까지 금지시킨다. 여기에 비영리 도서관의 행위, 법집행, 정보수집과 같은 정부활동, 역공학(리버스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 암호연구, 미성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 검사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일정한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예외조항들은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과는 달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권리자들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의 강화는 권리자들의 금전적 측면에서의 창작 동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음악 산업, 논문 등의 컨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게임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보호조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접근통제적 기술보호조치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적어도 저작권의 보호를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존하고 있는 저작권 분야에서 저작권의 보다 강력한 보호와 함께 저작권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저작물의 불법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소프트웨어의 부당한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1. 개념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물의 유통에는 저작자, 매체제작자, 정보제공자, 이용자 등의 주체들이 존재하며, 그 한가운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치한다. 물론 서비스제공자의 다양한 서비스나 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러한 정보 중에는 저작권의 침해물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 저작물의 유통문제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가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물의 유통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침해

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게 되며, 다만 이 과정에서 온라인 산업의 침체를 막기 위해 일정한 범위의 면책요건을 설정하게 된다.

2. 주요 쟁점 사항 및 사례 분석

가. 미국이 맺은 FTA상의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유형별로 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오만 FTA §15.10.29.(b)(i) 및 (vi), 미국-호주 FTA §17.11.29.(b)(i) 및 (vi)). 미국이 기체결한 FTA는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제512조에 규정된 바대로 그 유형을 ①경과적인 디지털네트워크통신, ②시스템 캐싱, ③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남아 있는 정보의 저장, ④정보의 소재확인도구로 나누어 그 책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35]

그리고 저작인접권자의 포함과 관련하여서는 '관련권리(related right)'를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저작인접권을 두지 않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의 국내사정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36] 미국의 경우 영미법계 국가로서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중요한 선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이미 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침해사실을 고지한 권리자가 서

35) 이규호, 한 · 미 FTA와 저작권: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한 · 미 FTA 협상시 고려사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5. 4., 50면.
36) 이규호, 전게논문. 51면.

비스제공자로부터 신속하게 침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DMCA 제512조 제h항에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침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명하는 연방지방법원의 소환장(subpoena)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된 것과 관련된다.

나. 법률 규정의 비교 및 분석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과 관련된 쟁점은 미국과 우리나라 법률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미국과 우리나라 법률에 관하여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8> 저작권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면책 이슈 관련 한미 규정 비교

구분	국내법 규정	미국 저작권법 규정
내용	○ 저작권법 - 제2조제22호(정의) - 제7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제77조의2(복제, 전송의 중단) ○ 프로그램보호법 - 제2조제11호(정의) - 제34조 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등) - 제34조 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37]하고 있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38]하고 있어 대상 저작물을 명시하는 부분 이외에는 동일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두 법률 모두 의무 및 책임제한 부분에 대한 규정의 내용은 크게 사실을 안 때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권리주장자에 의한 중단 요구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방지 및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책임이 면제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복제·전송의 방지 및 중단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소명 이후의 서비스 재개요청을 받은 경우의 요건 및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공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 내용은 대상 저작물이 다를 뿐이고 규정의 내용은 동일하다. 그리고 미국 법에서와는 달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다.[39]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디지

---

37) 저작권법 제2조

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9) 이규호, 전게논문. 61면.

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법)의 제2편에 “온라인저작권침해책임제한법”에 서비스제공자를 서비스유형을 구분하여 규정하였는데[40], ①일시적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 ②캐싱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system caching), ③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정보(information residing on system or networks at direction of users), ④정보소재 확인 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s) 제공자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각각의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다른 국가 등과 맺은 FTA 협정에서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만 남아 있는 상태로서, 상기한 것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침해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소환장을 받도록 하고 있다.

40)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의 개정법이므로, 해당 규정들은 미국 저작권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표 4-9> 미국 저작권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유형별 면책 사유 사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구분	면책 사유	비고
일시적 디지털네트워크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		
캐싱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정보(호스팅 사업자)	-서비스제공자가 침해물 또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로 직접이익이 없는 경우 -고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권리주장자의 고지 및 콘텐츠 제공자의 반대 고지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침해물로 주장되는 콘텐츠 발신자의 정보(신원)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사법절차 마련 규정
정보소재 확인 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s) 제공자	상동	상동

<표 4-10> 저작권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면책 이슈 관련 해외 입법 사례

구분	내용
일본	-2001년 특정전기통신업무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권리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하는 것으로 규정
유럽연합 지침	-2000년 전자상거래 지침에서 서비스제공자를 단순 도관, 캐싱, 호스팅서비스로 규정하고 미국과 유사한 면책사유 제시

다. 주요 쟁점 사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41] 및 책임 감면[42] 규정은 2002년 12월 30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에 도입되었고, 저작권법상에는 2003년 5월 27일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 FTA에서는 미국이 맺은 다른 FTA 문서를 토대로 한다면,[4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타당성 논의가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및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이며, 미국의 소환장제도 도입 문제의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은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유형별로 정할 것인지 여부, ②일시적 복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다룰 것인지 여부, ③면책요건 중 고지에 의한 서비스중단(notice and take-down)에 있어 구체적인 통지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④저작권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인정할 것인지 여부[44] 등 네 가지로 정리된다.

---

4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2조의2

4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2조의3

43) 미국이 맺은 FTA 중에서 가장 최근의 FTA로 오만과의 FTA가 있으며, 이 FTA에서 지적재산권 부분이 한국과의 FTA에 있어서의 모델 규정에 가깝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과거 미국이 진행해 온 모델 규정 작업에 오만과의 FTA에서의 규정이 참고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dvisory Group Reports on U.S.-Oman FTA: The U.S.-Oman Free Trade Agreement (FTA)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USTR, 2005. 11, p.3.

44) 이규호, 전게논문. 50면.

라. 찬반론

1) 반대론

반대론 또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러한 반대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미국법은 서비스제공자를 4가지로 유형화한 후 구체적 면책요건을 법정하고 있으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법정하면 기술변화 속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법률 적용의 공백 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리고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사유 중 "고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권리자가 권리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나, 미국법에서는 권리자만으로 충분하며, 대신 위증죄로 처벌받겠다는 선언을 하게 한다. 또한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에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45]

2) 찬성론

미국의 예와 같이 법원에 침해자 정보제공청구를 하고 보전처분과 같은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명령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의 근거로 현재 이러한 제도의 부재로 침해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불필요한 형사사건이 과다하게 증대하고 있고, 침해자들의 신원 미파악으로 인하여 민사상의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점과 침해자들의 정보가 조기에 공개되면 개별적인 협상 또는 민사상의 청구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주장되고 있다.[46]

---

45) 남희섭, 전게논문. 34-35면.

이제는 굳이 한미 FTA 때문이 아니더라도 국제수준에 맞게 저작권법을 정비하고, 잘못된 입법을 이번 기회에 시정하여야 할 때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먼저 현행법은 기본적인 책임도 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어, 종래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고, 급기야 일부 대리중개업체에서 각 포털업체의 이용자 수만명을 고소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개선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대상을 유형별로 특정하고 각 유형에 따른 면책 요건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기술적으로 차단이 어렵다는 입증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입증토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더해 침해자의 신상정보 제공의무부과도 합리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따라 침해자의 신상정보제공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권리자가 침해를 구제받았다 하더라도 침해자가 임시적으로 삭제 등 조치를 취한 후, 다른 곳에서 다시금 침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크다고 한다.[47]

3. 고려사항

미국에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면책 요건을 서비스 유형별로 정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 유형을 미국처럼 규정하는 데에는 아직은 제시되지 않은 그리고 새로이 대두되는 기술환경을 반

46) 최정환,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 토론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6., 52-53면.

47) 윤성우, 한 · 미 FTA 저작권 분야 토론문: 한 · 미 FTA와 저작권 관련 협상의 쟁점 검토, 문화관광부, 2006. 6. 14, 2면.

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서비스유형별 면책의 범위를 기술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우리 법률 규정은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반영하기에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반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한 논리를 구성하는 데에도 쉬울 수 있다. 즉, 단순하고 추상적인 법률 규정으로 해석상의 상이함이 광범위해져서 복잡다기한 현상에 대해 법률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준수의 수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저작권자들의 권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미국의 소환장 제도 또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굳이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자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법률 제도를 이용하기가 힘들뿐더러 설사 시도를 하더라도 직접 증명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보다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저작권 보호기간

1. 개념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법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보호 기간의 만료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저작권법에서는 재산권의 종료 후에도 저작물로

인한 문화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 규정을 두어 인격권이 영속적으로 존재하도록 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보호기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일정한 기간까지이다.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그런데 보호기간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저작물을 성격이나 창작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그 보호기간을 장·단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에 있어서 이전의 선현들의 저작물을 참조하여 저작할 수밖에 없고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저작권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기간을 한정하는 것이라 하겠다.[48] 다만, 우리 헌법에는 구체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헌법에서 창작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의회에 권한을 준 것에 대해 살펴 보건데, 기간적 제한은 헌법상의 창작자의 보호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하겠다.[49]

결국,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저작자에게 창작의 유인을 일정기간동안으로 보상하고,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함으로써 사회전체적인 후생의 측면에서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2. 주요 쟁점 사항 및 사례 분석

가. 미국이 맺은 FTA상의 규정

48)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220면.

49) 미국 연방헌법 제8조(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제8항: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할 때 작가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고 통상적인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할 때에는 저작물, 실연, 음반이 공식적으로 판매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적어도 70년간 또는 이것들이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식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창작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최소 7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오만과의 FTA에서는 저작자 사후 70년간, 그리고 저작물, 실연, 음반의 경우 공식적으로 판매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적어도 95년간 또는 이것들이 창작 후 25년 내에 공식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소 120년까지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법률 규정의 비교

다음 예시에서와 같이 저작권 보호기간에는 다양한 입법례가 있는데, 저작권자의 사후 30년, 50년, 60년, 70년, 75년 이상의 국가들이 있으며, 아이보리코스트는 99년, 멕시코에서는 10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표 4-11>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슈 관련 해외 입법 사례

구 분	내 용
베른협약	-저작자의 생존 및 사후 50년으로 규정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1993년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기간 조정에 관한 지침에서 70년으로 규정 - 독일 70년, 프랑스 70년 등으로 지침이 발효된 이후에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조정
미국 CETA	- 보호기간을 일괄하여 20년씩 연장
미-싱가폴 FTA	-70년으로 규정(제16.4조 제4항)하고, 모든 정부기관에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은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요구(제16.4조 제9항)
미 - 호주 FTA	-정부기관에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 요구(제17.4조 제9항)

다. 주요 쟁점 사항

저작권의 보호기간의 연장에는 저작권자의 입장에서의 찬성론과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의 반대론이 각각의 논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 및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많은 변경이 있어왔지만, 1998년의 소니보노저작권기간연장법(Sony Bono Copyright Terms Extention Act of 1998, CETA)에 의해서 저작자 사후 70년,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짧은 기간으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는 저작자 사후 70년으로의 연장에 대한 검토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4-12>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슈 관련 한미 규정 비교

구분	국내법 규정	미국 저작권법 규정
규정	○ 저작권법 - 제36조(보호기간의 원칙) - 제37조(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 제38조(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 제38조2(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제39조(계속적간행물등의 보호기간) ○ 프로그램보호법 - 제7조(프로그램저작권)	○ 미국 저작권법 제302조
내용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 -저작권법: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 단체 명의의 저작물은 공표시부터 50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단체명의의 저작물, 무명, 이명 저작물은 최초 발행후 95년간 또는 창작후 120년중 빠른 기간

라. 찬반론

1) 미국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에 대한 찬성론[50]

미국에서 소니보노저작권기간연장법은 많은 논란이 되었다. 이 법에

50) 이영록, 저작권 보호기간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52면 이하 참조.: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찬반론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 제정에 관한 찬반론을 통하여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미국에서의 찬반론과 국내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찬반론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르면 자연인 저작물은 사후 70년까지, 직무저작물은 95년간 보호된다.[51]

이 법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유럽의 수준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보호기간 연장 찬성론자들의 핵심 논거였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유럽이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기간이 아니면 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고, 곧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이는 국익적 관점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찬성론자들도 교역국과의 저작권 법제의 통일을 기해 보호기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수명연장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즉, 저작자들이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지금보다 긴 저작권 보호기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보호기간이 저작자와 자손 2세대를 보호하기에 충분히 길지 않다는 것과 최근의 기술발달의 결과로 저작물의 상업적 수명도 훨씬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창작유인의 효과는 다른 논거들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진작시켜 문화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래 창작될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창작유인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기술발달로 저작권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인터넷의

---

51)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첫째, 이법이 제한된 기간동안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상 규정에 위배되며, 둘째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어느 주장도 인용하지 않고 배척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CETA를 제정한 것은 의회가 한정된 기간 동안 저작자를 보호하라는 헌법상의 수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이다.: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5, 215면.

영향을 배포의 세계화, 국제적 협력 필요성, 개인의 배포기회 증가의 3가지로 분석한다. 이러한 인터넷의 영향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필요성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2) 국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찬성론

국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찬성론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에 대한 찬성론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찬성 논리들이 존재한다.

먼저 보호기간의 연장이 국제적인 조류[52]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3년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고, 음악, 문학 등 기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20년 확대해 70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브라질 등 구미 선진제국의 많은 나라가 이미 보호기간을 사후 70년으로 연장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대만,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 각국이 사후 70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확대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창작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주장도 있다. 먼저 외국 다수의 입법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짧은 저작권 보호기간은, ①우리나라에서 1950년 중반부터 많은 저작물들이 창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7년에 사망한 작가의 경우나 1957년에 공표된 단체명의 저작물은 이미 내년인 2007.12.31.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고, 회사명의로 공표된 음

52) 권순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국제적 조류와 시각, 저작권문화 제134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10, 7-8면.

반들도 2016.12.31.부터는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고, ②이제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상품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그 나라의 저작물과 동일한 기간동안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③일본이나 미국의 영화사들 또한 영화투자자들과 한국영화가 공동제작 또는 한국영화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는 투자이익의 장기적인 환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가능한 국회의 권한이며, 이러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기타 헌법상의 의미의 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창작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53]

3) 미국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 반대론[54]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반대론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국제적 조화가 유용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유럽에 있어서의 자연권 사상과 같은 다른 중요한 원칙과의 타협을 의미한다면 통일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즉 이들은 유럽의 경우 자연권 전통으로 인하여 보호기간 연장의 공적 비용이나 혜택에 대한 신중한 분석에 근거하지 않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분석했다. 물론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미국은 유럽에서 미국의 저작권자가 짧은 기간 동안만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조화가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하게 하는 정책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53) 최정환, 전게논문, 51-52면.
54) 이영록, 전게논문, 52면 이하 참조.

찬성론자들의 저작자와 2세대 보호 주장과 관련하여 보호기간 연장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주장은 비논리적인 것이고,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찬성론자들이 보호기간 연장이 저작자에게 저작물 창작의 큰 동기로써 작용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대론자들은 보호기간 연장의 창작유인 효과는 장래 저작물을 창작할 저작자에게조차 그 유인효과가 미약하고, 더욱이 기존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소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창작 유인과 관련이 없으며 또한 이러한 보호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저작자가 아닌 경우가 많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대론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풍성한 퍼블릭도메인(public domain)을 유지하는데 있어 공중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창작유인으로서의 저작권은 그 보호기간 동안 독점적 이윤의 추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많은 찬성론자들이 보호기간 연장은 공중에게 비용을 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보호기간 연장은 퍼블릭도메인에 있을 때보다 저작물의 복제비용을 더 지불하게 하며, 저작권자의 독점의 결과로 대부분의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덜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 다른 문제로써 이용허락을 얻기 위한 비용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이 저해되는 점을 들었다. 즉, 퍼블릭도메인에 들어가야 할 저작물이 그렇지 않고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의 해악을 지적했다.

4) 국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반대론

국내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반대론 또한 기본적인 논리들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에 대한 반대론을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다.

먼저 보호기간 연장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저작물을 한정하여 연장할 것과 한·미 FTA에서는 이를 배제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이 글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 결정 문제가 한 국가의 법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는 점을 상징하듯이, 미국은 자국의 캐릭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법을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도 그 연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지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자국의 문화산업 보호를 위해 한·미 FTA 관련 협상에서는 보호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의 현행 보호기간을 존속·유지하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55]

그리고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논의는 문화와 과학의 발전을 위해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저작권제도의 근본취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강대국의 소수 대기업들의 사적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므로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이것의 근거로 ①미래의 창작동기를 억제시키고 문화 창조 행위를 한탕주의로 전락시키는 '반문화주의' 조치이고, ②지금은 저작권자들의 사적이익이 법적·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기존의 사익과 공익간의 균형이 저작권자들의 사적이익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고 있으며, ③연장된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연장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사장시키게 될 것이고, ④저작자 사후 70년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은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 자국에서조차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⑤강대국들의 통상압력을 위한 수단이고, ⑥우리나라는 베른협약과 WIPO 신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⑦저작권법은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와

55) 박성호, 한·미 FTA 저작권 분야 -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6. 14, 55-57면.

과학, 그리고 지식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므로, 저작권 보호 문제는 특정 '산업계'의 요구나 '통상' 압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56]

3.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저작권보호 기간에 있어서 검증된 수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호기간이 연장될 경우 단기적으로 미국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royalty)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57]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미국의 비즈니스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요구강도가 클 것이다.[58]

그러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이미 많은 부분 개방이 되어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이미 많은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주기가 상당히 짧다.[59]

그러므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계의 개방도나 소프트웨어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다면, 보호기간의 확대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

56) 조덕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국제적 조류와 시각, 저작권문화 제134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10, 8-10면.

57) 이 경우 저작권 보호 상황 및 저작권 등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하고 저작권 위탁관리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저작권 확인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저작물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외국 저작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의 저작권 산업을 적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양영준, 미국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 합헌 판결에 대한 소고, 계간저작권 2003년 봄호 9면 이하 참조.

58) 미국에서는 2003년 Eldred v. Ashcroft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에 대한 위헌논쟁을 마무리하였으므로 우리나라 등 타국에 대해서도 보호기간을 연장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 올 가능성이 많다.

59) 이러한 점은 그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저작권 보다는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특허로 보호하는 경우 해당 기술은 20년간만 보호되고,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이 사회로 환원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영향은 극히 미미하거나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제5절 저작권 관련 쟁점 및 영향도 분석에 대한 요약

한미 FTA에 따라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함으로써 저작권자 권익에 영향이 미친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조사한 "한·미 FTA 지적재산권 쟁점 분야 중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에 대한 업계 인식 및 실태조사"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한미 FTA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미 이러한 영향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겠으나, 본 논문의 상기 내용들을 토대로 하였을 때에는 한미 FTA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 부정적이기 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한미 FTA 협상의 결과로 저작권자의 권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저작물의 사회적 공급이 증대될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에 의한 신규 저작자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저작물의 공급이 다양화되고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예전보다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이미 국내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국외

기업들에게 충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내 저작권 보호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국외 기업들의 수익의 증가라는 단순한 수치보다는 국내 저작권자들의 창작활동을 고무시키는 긍정적인 성과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호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는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수명주기(life cycle) 짧기 때문에, 현행법률 하에서도 수명주기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저작물로써의 보호기간이 상당히 긴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실상 의미가 퇴색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 사후 50년(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50년)을 저작자 사후 70년(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70년 또는 125년)으로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로 인한 저작권 강화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린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원천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는 단순히 한미 FTA를 체결한다고 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률 규정의 효과는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존중과 준수에 의해 제대로 발휘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와 동시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관련 홍보정책등도 필요할 것이다.

제5장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정책상의 제안

FTA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제사항은 미국이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이 곧 지식서비스 경제로서 우리의 목표시장이라는 점이며, 상호의 시장개방과 무한경쟁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재고하고, 미국 관련 시장에 폭넓게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 5-1>에서와 같이 소프트웨어 산업영역별로 한·미 FTA 체결에 관련하여 도출된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표 5-1> SW 산업영역별 한·미 FTA 체결 관련 주요 이슈/영향도 및 정책 대안

구분	주요 이슈/영향도	정책 대안
패키지 소프트웨어	-미국SW 제품 특히 시스템기반 SW의 국내 시장 점유율/의존도 높음 -국내 SW제품의 경쟁력 취약	-SW제품의 상호운영성 확보 및 기술표준의 확대 적용 -기반SW 개발능력 확보 -고부가가치 영역의 SW기술력 제고
IT서비스	-미국 관련시장의 규모는 크나, 미국업체의 독무대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글로벌화 지향 -미국 IT서비스 관련 시장에 진출 지원
디지털콘텐츠/DB	-디지털제품의 통합(컨버전스) -SW는 무관세이나 관련 디지털제품의 관세	-통합관점에서의 관세정책 대응 -국내 디지털콘텐츠의 고부가가치화

통신/전자 상거래	-디지털재화의 전자상거래 영구 무관세 요구 -디지털재화의 재산권 보호 정책 요구	-영구무관세 관련 협상시 점진적인 추이 검토 필요성 반영 -현지법인 없는 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대금 결제 등 국제적 규범 및 기술표준 확보 필요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화 -국내 서비스기업 생산성(의사소통능력) 저하 -관련 산업에서의 IT 컨버전스	-국내 고용, 투자규모 축소 대책 필요 -국산 SW 패키지의 서비스화 제공 기술기반 확산 -미국시장 진출기반 확보 및 정책지원
지적 재산권	-일시적 저장 -접근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보호기간의 연장	-일시적 저장, 접근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정책 제도화에 관한 점진적 확대 및 시기 조절 -보호기간 설정에서 SW이외의 지적재산권 산업과의 관련성 검토
정부 조달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비율 저조 -개방형 기술표준 정책 설정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련 법/규제적 차별사항 시정요구 -정부조달의 범위설정: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공공기관

첫째,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미국 SW 제품 특히 시스템기반 SW의 국내시장 점유율/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국내 SW제품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시장에서 상호운영성이 확보된 SW제품과 관련된 기술표준의 확대 적용, 운영체제, DBMS 등 시스템 기반 SW 개발능력의 확보와 고부가가치 영역의 SW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IT서비스영역에서는 미국 관련시장의 규모는 크나, 미국업체의 독무대가 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며 미국 IT서비스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콘텐츠 및 데이터베이스(DB)영역에서는 디지털제품의 시장규모 증가에 따라 국내 디지털콘텐츠의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디지털 제품의 통합(컨버전스) 추세에 따라서 SW는 무관세이지만 SW 이외의 관련 콘텐츠와 통합관점에서의 관세정책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신/전자상거래 영역에서는 디지털재화의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영구 무관세를 요구하고, 디지털재화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요구에 대해서, 영구무관세 관련 협상시 점진적인 시장 및 기술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을 협상에서 반영하여야 하며, 현지법인이 없는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세에 따라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대금 결제 등 국제적 규범 및 기술표준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서비스영역에서는 소프트웨어제품의 전자상거래에 이어 서비스화(SaaS) 추이는 확산되고, 국내 서비스기업 생산성 및 의사소통능력은 낮은 수준에 있어 미국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러한 추이를 고려할 때 국내 고용, 투자규모의 축소가 가져오는 대책이 필요하며, 국산 SW 패키지의 서비스화 제공 기술기반의 확산과, 미국 IT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의 확보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IT 서비스 이외의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IT와의 컨버전스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IT가 종속 또는 부가적으로 내장/융합/포함되어 거래되는 형태에서의 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렴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적 재산권 영역에서는 일시적 저장의 인정, 접근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등 미국에서 지적 재산권의 철저한 보호정책 요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적재산권의 가치와 미래시장의 규모 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함은 물론, 국내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의 국익보호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정책 제도화에 관한 점진적 확대 및 시기의 조절이 필요하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설정

에서는 SW산업 이외의 지적재산권 산업과의 관련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달 영역에서는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국내 업체의 참여비율이 저조한 상황이며, 개방형 기술표준 정책의 설정에서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련 법/규제적 차별사항을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정부조달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 공공기관 등의 목록을 협정의 부속서류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01] 강태욱, PS2- chip 사건을 통해 바라본 기술적조치의 보호범위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과 신패러다임-법적·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디지털법연구소, 2006. 6. 30.

[02] 고상원, 고도지식기반사회 창조를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NSF2006 발표자료, 2006. 7. 12.

[03] 고영국, SW 지적재산권 관련 FTA 대응방안 연구,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 위원회, 2005. 12.

[04] 김덕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전자거래 (e-Business), 세종대, NSF2006 발표자료, 2006. 7. 12.

[05] 김정곤, 한미FTA를 통한 대미 진출 확대전략 세미나, 한국무역협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4.

[06] 김종선 외 2명, FTA 협상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분야의 양허 현황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07] 김종선 외 2인, FTA 협상을 위한 과학기술관련 서비스 분야의 양허 현황 분석: 한국·일본, 한국·싱가폴 FTA 협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8.

[08] 김현철.박덕영, FTA체결에 있어서 저작권분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미국을 중심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연구자료 4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12.

[09] 권순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국제적 조류와 시각, 저작권문화 제134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10.

[10] 남희섭,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한미FTA 저작권 분야에 대한 입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2006. 5. 24. <http://nofta-ip.jinbo.net/>.

[11] 무역연구소, 미-칠레, 미-호주, 한-칠레 FTA의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유보 리스트 내용을 중심으로, FTA연구팀, 2006. 3. 28.
[12] 무역연구소, 한-미 FTA를 통한 상품 분야 대미 진출 확대 방안, FTA 연구팀, 2006. 4.
[13] 문지영 외 2명, IT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Offshoring 적용 모델 고찰 : A사 사례를 통하여, Entrue Consulting Partners.
[14] 박성호, 한 · 미 FTA 저작권 분야 -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6. 14.
[15] 송영식 ·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5.
[16] 양영준, 미국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 합헌 판결에 대한 소고, 계간저작권 2003년 봄호.
[17] 윤창인, 한중일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작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2.
[18] 이규호, 한 · 미 FTA와 저작권: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한 · 미 FTA 협상시 고려사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5. 4.
[19] 이대희, "디지털환경에서의 접근권의 인정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제34호), 2004. 3.
[20]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육법사, 2003. 9.
[21] -----, 일시적 복제의 입법방안에 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5.
[22] 이영록, 저작권 보호기간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3] 이은우,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미국 DMCA의 문제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6.
[24] 이한영, IT분야 최근 통상현안과 정책과제(KISDI 이슈리포트 03-24), KISDI, 2003. 12.
[25] 임성주, 한미 FTA 추진에 따른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확대 전략, KOTRA 통상전략팀, 2005.
[26] 윤성우, 한 · 미 FTA 저작권 분야: 한 · 미 FTA와 저작권 관련 협상의 쟁점 검토, 문화관광부, 2006. 6. 14.
[27] 정보통신연구진흥원, Global IT Market Trend, 정보조사연구팀,

2005. 12.
[28]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29] 정인교, 한•미 FTA의 주요 이슈와 정책시사점(KIEP 세미나 브리핑), 세계경제, 2002. 1.
[30] 조덕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국제적 조류와 시각, 저작권문화 제134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10.
[31] 주문정 · 방은주, “SW 육성에 국가역량 집중”, 전자신문, 2005. 12. 02.
[32] 최정환,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 토론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6.
[33]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효과적 S/W보호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하), 정보통신부, 2005.
[34] 하나금융연구소,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제5호), 2006. 2. 28.
[3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미 FTA 체결관련 SW산업계 설문조사 결과, 2006. 6.
[3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자 경쟁력 강화 전략, NSF2006 발표자료, 2006. 7. 12.
[3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 시장의 신조류 ‘서비스로 제공되는 SW(SaaS)’-산업동향, 2006. 9. 4.
[38]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4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보고서, KIPA, 2005.
[39]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5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보고서, KIPA, 2006.
[40]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연구, KIPA, 2005. 12.
[41]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미간 소프트웨어산업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KIPA 정책연구 05-01, 2005.
[4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미FTA, 개방과 산업구조 고도화(SW Insight 정책리포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센터, 2006. 6.
[4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IT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보고서,

KIPA, 2003. 12.
[44] 한미자유무역협정중 지적재산권 및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의견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동대책위원회.
[45]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미 FTA의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이슈: -「한・미 FTA에 대한 소프트웨어업계 인식조사」결과 -, 2006. 10.
[46] Knowledge Research Group,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 수출기업 SW 수출동향, 2005. 1.
[47] Stephen E. Siwek,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Economy: The 2004 Report,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2004). <http://www.iipa.com/pdf/2004_SIWEK_FULL.pdf>.

[부록1] 관련 용어

무역조정지원법(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FTA 상대국에서의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로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면 정부로부터 사업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설비투자·인력확보 자금, 경영안정·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 한 · 미 FTA에서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을 두고 논란이 있다.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를 국내구제절차 또는 국제중재분쟁에 제소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정. 한 · 미 FTA 협상안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다. 다국적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방해하는 모든 법과 제도 등이 제소 대상이 되기에 주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원칙적으로 수입이 제한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의 리스트. 의약계에서는 효능이 뛰어난 신약이라도 가격 대비 효과를 따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인 의약품선별등제를 가리킨다.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품목의 리스트. 의약계에서는 지정된 특정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과 맺는 FTA는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따른다.

양자간 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미국식 협정 용어. 일반 모델과는 달리 미국 모델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적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BIT는 한 · 미 FTA 협상안 투자 조항에 포함돼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등 무역장벽을 다자협상을 통해 제거하고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 자유무역을 확대하려고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서명하고 1948년 1월에 발효된 조약. FTA는 GATT의 조약문 24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쌍무협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1992년 12월 3국 정부가 조인해 1994년 1월 발효됐다.

신속협상권(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에서 국제협상을 효율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 국제통상협정을 더 신속하게 체결하려는 것이 취지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TPA 권한을 부여하면 의회는 수정권한 대신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일정 기한(90일) 내에 수정 없이 찬반 결정만을 하게 된다. 한 · 미 FTA 협상 일정은 여기에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

세부원칙(modality)

관세와 보조 감축 의무에 관한 자세한 기준과 방법(예: 감축률, 이행기간, 대상품목 등)을 말하며, 세부원칙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이행 계획서(C/S)를 제출하고 WTO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행하게 된다.

기본골격(framework)

세부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문서로 협상목표(대상)와 방향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기본 골격에 자세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시킨 것이 세부원칙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는 특정 물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GATT 제19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GATT 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UN 통계분과위원회가 경제분석 및 무역자료의 국제적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무역상품 분류방법의 표준국제무역분류(SITC)를 추천하였고, 1950년 7월 21일에 UN경제사회이사회가 이를 선포하였고, 1960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SITC 분류방법에 따라 무역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SITC는 식료품, 원료, 가공품, 화공약품, 기계 및 운반기구들과 같이 물품의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유보(Annex 9A)

서비스 협정상의 의무에 불일치하는 현존 정부조치를 의미하며 장래에는 현존하는 것 보다 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불가

미래유보(Annex 9B)

서비스 협정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분야를 의미하며, 현행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체결국간의 서비스 제공자가 동등한 자격을 지닐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

치로서, 외국산 물품이나 서비스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는 원칙임.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사항은 비교대상이 되는 수입품과 국산품이 동종물품(like product)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제소가 많음

최혜국대우(Mast Favored National Treatment: MFN)

모든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WTO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른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최혜국대우 면제조치를 허용하고 있음.

시장접근(Market Acces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및 부속서(GATS)에서 회원국의 구체적인 의무사항중의 하나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 형태에 따라 외국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분야는 양허표에 기재되어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시장 접근 대상에서 제외됨(Positive 방식)

[참고 1]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수출액(단위 : 천US$)

구 분			2004	2005P
패키지 소프트웨어			91,911	61,918
	시스템 소프트웨어		51,464	26,961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915	-
		통신 소프트웨어	28,501	4,421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1,997	464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3	46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16,355	16,000
		미들웨어	-	1,101
		기타 시스템소프트웨어	3,693	4,929
	개발용 소프트웨어		3,069	7,402
	응용 소프트웨어		35,498	19,604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1,166	67
		기업관리 소프트웨어	9,577	7,046
		과학용 소프트웨어	1,500	50
		산업용 소프트웨어	12,704	5,362
		기타응용 소프트웨어	10,551	7,079
	기타 패키지 소프트웨어		1,880	7,951
컴퓨터관련서비스			220,582	228,096
	시스템통합(SI)		136,084	156,670
	시스템관리 및 유지보수(SM)		56,957	70,731
	자료처리(DP)		14,905	-
	ASP		2,456	501
	정보보호서비스		-	50
	기타 컴퓨터관련서비스		10,180	144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201,035	317,548
	정보용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2,604	246
		교육용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	206
		생활문화정보용콘텐츠	2,604	40
	오락,게임용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153,110	273,283
	디지털출판물 개발서비스		10	-
	디지털영상물 개발서비스		42,884	43,531
	기타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2,427	488
데이터베이스제작, 검색대행			811	7,032
합 계			514,339	614,594

[참고 2]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수입액

(단위 : 천US$)

구 분			2004	2005P
패키지 소프트웨어			392,751	474,240
	시스템 소프트웨어		47,075	525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4	-
		통신 소프트웨어	934	-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8	-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3,829	-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6,053	525
		미들웨어	-	-
		기타 시스템소프트웨어	36,210	-
	개발용 소프트웨어		58,916	876
	응용 소프트웨어		282,055	472,839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25	4,707
		기업관리 소프트웨어	229,837	363,354
		과학용 소프트웨어	2,100	680
		산업용 소프트웨어	44,024	104,098
		기타응용 소프트웨어	6,069	-
	기타 패키지 소프트웨어		4,705	-
컴퓨터관련서비스			22,311	11,233
	시스템통합(SI)		22,058	9,087
	시스템관리 및 유지보수(SM)		167	2,146
	자료처리(DP)		-	-
	ASP		86	-
	정보보호서비스		-	-
	기타 컴퓨터관련서비스		-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1,589	64
	정보용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20	-
		교육용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10	-
		생활문화정보용콘텐츠	10	-
	오락,게임용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1,208	64
	디지털출판물 개발서비스		-	-
	디지털영상물 개발서비스		361	-
	기타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	-
데이터베이스제작, 검색대행			-	-
합 계			416,651	485,537

[참고 3]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무역수지

(단위: 천US$)

구 분			2004	2005P
패키지 소프트웨어			-300,840	-412,322
	시스템 소프트웨어		4,389	26,436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874	-
		통신 소프트웨어	27,567	4,421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1,989	464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3,826	46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10,302	15,475
		미들웨어	-	1,101
		기타 시스템소프트웨어	-32,517	4,929
	개발용 소프트웨어		-55,847	6,526
	응용 소프트웨어		-246,557	-453,235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1,141	-4,640
		기업관리 소프트웨어	-220,260	-356,308
		과학용 소프트웨어	-600	-630
		산업용 소프트웨어	-31,320	-98,736
		기타응용 소프트웨어	4,482	7,079
	기타 패키지 소프트웨어		-2,825	7,951
컴퓨터관련서비스			198,271	216,863
	시스템통합(SI)		114,026	147,583
	시스템관리 및 유지보수(SM)		56,790	68,585
	자료처리(DP)		14,905	-
	ASP		2,370	501
	정보보호서비스		-	50
	기타 컴퓨터관련서비스		10,180	144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199,446	317,484
	정보용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2,584	246
		교육용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10	206
		생활문화정보용콘텐츠	2,594	40
	오락,게임용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151,902	273,219
	디지털출판물 개발서비스		10	-
	디지털영상물 개발서비스		42,523	43,531
	기타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2,427	488
데이터베이스제작, 검색대행			811	7,032
합 계			97,688	129,057

[부록2] 한 · 미 FTA 관련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 · 미 FTA 협상에 대한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프트웨어기업을 상대로 한.미 FTA 관련 조사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조사[1)]가 유일하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한.미 FTA의 의미를 조사했으며 협상체결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현재 한.미간 소프트웨어 교역에 있어서의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우선 상세한 의견 및 사실 확인 내용이 포함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1차 조사서를 이용하여 A업체의 마케팅부서 담당과장, 그리고 B업체의 국제업무 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연구자 공동으로 참여한 인터뷰에 시범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들 두 업체는 미국에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 소프트웨어업체들이다.

그러나 기타의 많은 소프트웨어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한 · 미 FTA 관련 의견을 수집하는 데는 1차 조사서에서 일반적으로 너무 상세한 내용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2차 조사서에서는, 간략한 문항 위주로 총 16 문항만으로 구성하였다. 2차 설문조사서에 포함된 문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응답업체 일반현황

② 미국 진출(진출 가능 포함) 사업분야

③ 한 · 미 FTA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업체의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

1) "한 · 미 FTA 체결관련 SW산업계 설문조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6.5.

향

④ 한 · 미 FTA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의제/이슈

⑤ 미국과의 교역에 대한 장애요소

⑤ 미국 진출시 불이익(불리)한 경험/사례

2차 조사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고된 자료를 제공받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의 총 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송되었다. 조사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전담직원이 전화 협조요청을 통하여 응답자료을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은 발송업체의 약 20%에 해당되는 10개 업체로부터 수집되어 응답율은 저조하였다.

조사서에 대한 10개 응답업체의 기업 규모는 종업원수가 평균 86.9명이었으며(최소 9명, 최대 250명), 응답업체는 모두 중소기업 규모의 소프트웨어 제품업체이었다.

2. 조사서 응답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 작성하여 제시한 조사서의 응답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문항에 응답이 전혀 없는 문항도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응답내용이 있는 문항을 대상으로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2)]

가. 미국에 진출한 또는 진출가능한 사업분야

미국에 진출한 또는 진출가능한 사업분야는 다음의 <표 A-1>에서

2) 응답내용이 전혀 없는 조사서 문항은 한 · 미 FTA가 체결될 경우 귀사가 기대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한 · 미 FTA 체결에서 예상되는 수출액 증가 규모, 구조조정 발생에 대한 예상 및 그 규모, 미국과의 교역에서의 장애요소 등이다.

와 같이 나타났다.

<표 A-1> 응답업체의 미국진출현황

구 분	기진출	진출가능
SW패키지 개발판매	2	3
컴퓨터 관련 서비스	1	3
전자상거래	1	2
기 타	2	2

응답업체는 모두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미국에 이미 진출한 업체는 6개 업체이다. 또한 나머지 업체들도 미국 시장에 진출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미 진출했거나 또는 진출가능한 업종은 대체로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해당업체의 제품/서비스가 한 · 미 FTA 체결의 영향을 받는 시점

응답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 · 미 FTA 체결의 영향을 받는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의 응답결과는 다음 <표 A-2>에서와 같이 요약되었다.

<표 A-2> 한 · 미 FTA 체결의 영향을 받는 예상시점에 대한 응답

선택지	업체수	비율(%)
1) 발효 즉시	1	10.0
2) 발효 후 1년 이내	1	10.0
3) 발효후 2~3년 이내	4	40.0
4) 발효 후 4~5년 이내	0	0.0
5)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4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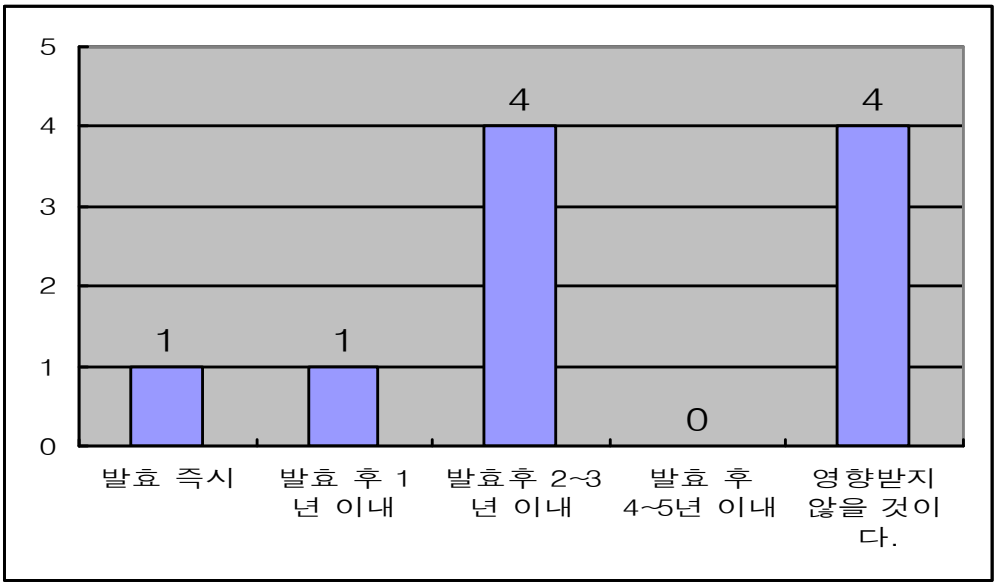

<그림 A-1> 한 · 미 FTA 체결의 영향을 받는 예상시점에 대한 응답

결론적으로는 한 · 미 FTA 체결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편이다.

라. 한 · 미 FTA 협상 타결시 기대되는 기업활동에의 이익

한 · 미 FTA 협상이 타결된다면 귀사의 기업활동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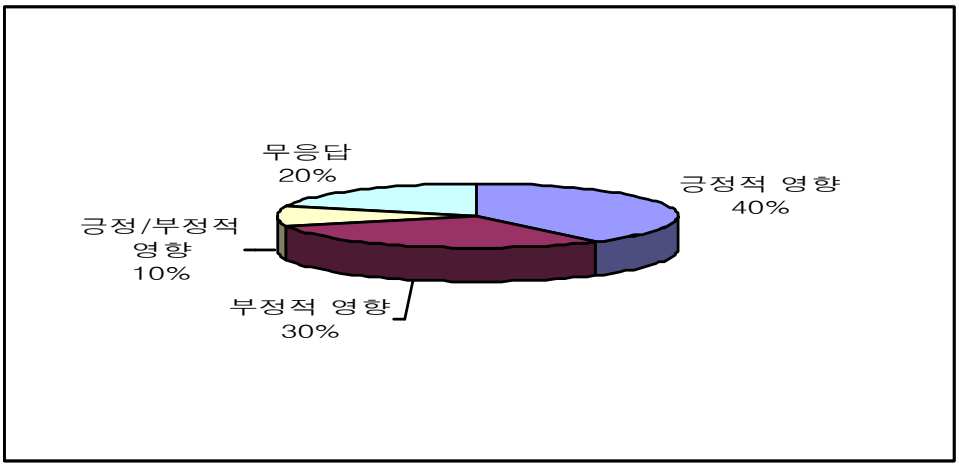

<그림 A-2> 한 · 미 FTA 협상 타결시 기대되는 기업활동에의 예상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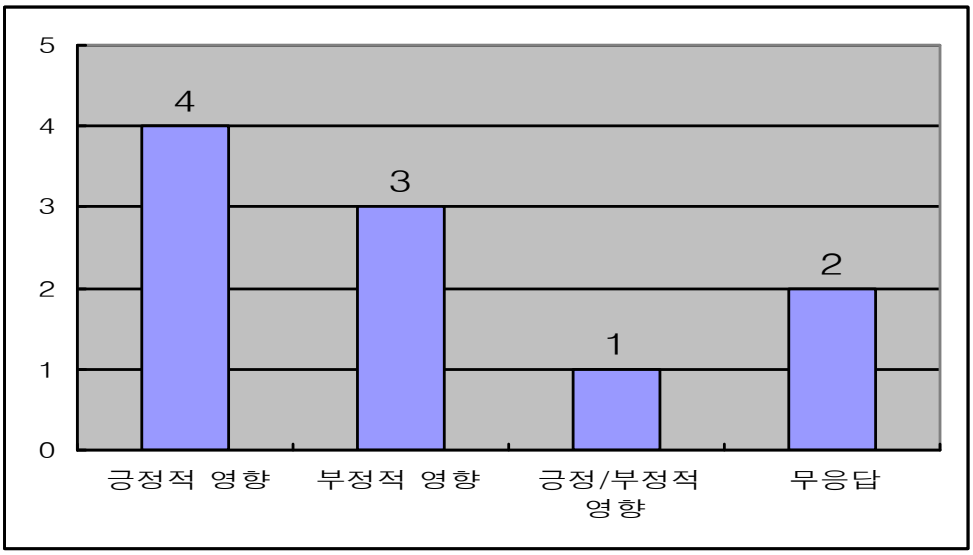

<그림 A-3> 한 · 미 FTA 협상 타결시 기대되는 기업활동에의 예상이익

응답결과로는 긍정적 영향(40%)을 예상하는 응답업체가 가장 많았고, 부정적 영향(30%),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예상하는 응답업체(10%)의 순이었으며, 무응답 업체도 20%를 차지하고 있다.

마. 한 · 미 FTA 체결에 대한 긍정적 영향

① 긍정적 영향의 종류

한 · 미 FTA 체결이 귀사에 가져다 줄 긍정적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 A-3>과 같이 나타났다.

<표 A-3> 한 · 미 FTA 체결이 주는 긍정적 영향

선택지	응답업체수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감소	2
미국 수입제품/서비스 가격의 인하	3
미국시장에서 외국경쟁기업 간의 우위점유	0
생산(개발)비용 절감	0
시장통합, 인력수급, 자원공급 용이	1
미국 외 국가에 대한 수출능력 향상	0
계	6

한 · 미 FTA 체결이 귀사에 가져다 줄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응답결과로는 미국 수입제품/서비스 가격의 인하,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장애요인의 감소, 그리고 시장통합, 인력수급, 자원공급 용이한 점 등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한 · 미 FTA가 체결되면 가장 <u>유리한</u> 입장에 서는 기업

한 · 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기업중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다음 중 어느 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 A-4>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표 A-4> 한 · 미 FTA 체결시 가장 유리한 기업군

선택지	응답업체수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중견기업	1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신생기업	0
대형 IT서비스(SI)기업	3
소규모 IT서비스(SI)기업	1
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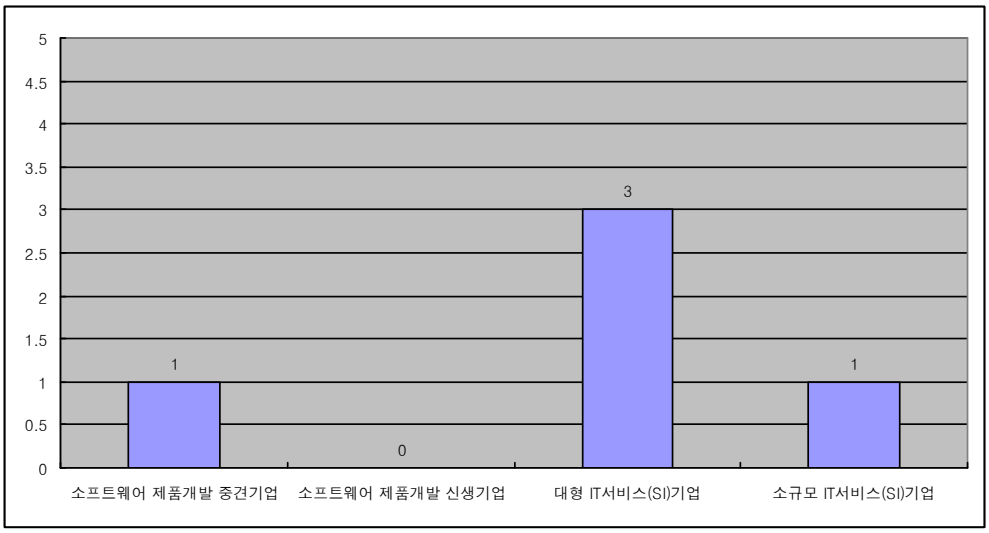

<그림 A-4> 한 · 미 FTA 체결시 가장 유리한 기업군

응답결과를 보면, 대형 IT서비스(SI)기업을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중견기업 및 소규모 IT서비스(SI)기업을 들고 있다.

바. 한 · 미 FTA 체결에 대한 부정적 영향

① 한 · 미 FTA 체결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예상

한 · 미 FTA 체결로 귀사에 큰 규모의 구조조정 비용/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 A-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표 A-5> 한 · 미 FTA 체결시 기업의 구조조정 발생여부

선택지	응답업체수
예	2
아니오	4
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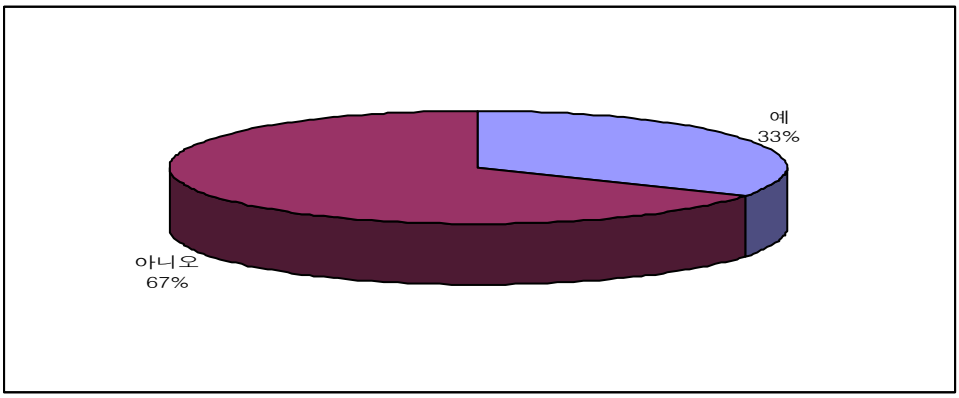

<그림 A-5> 한 · 미 FTA 체결시 기업의 구조조정 발생여부

② 한 · 미 FTA 체결에 따라 귀사에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손실

한 · 미 FTA 체결에 따라 귀사에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손실이 있다면 어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A-6>과 같이 나타났다.

<표 A-6> 한 · 미 FTA 체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손실

선택지	응답업체수
심각한 수준	0
적당한 수준	1
약간	4
전혀 없을 것이다	1
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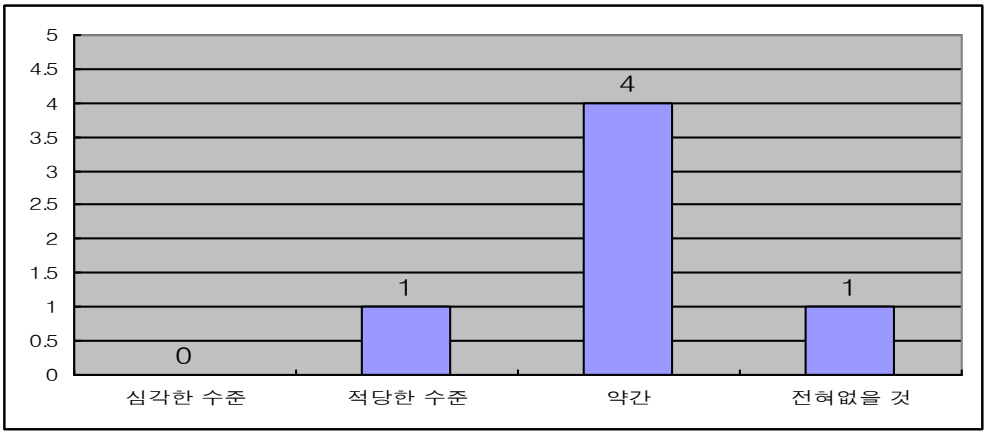

<그림 A-6> 한 · 미 FTA 체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손실

응답결과로서는 심각한 수준의 구조조정 비용이나 손실을 예상하는 기업은 없었으며, 약간의 정도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한 · 미 FTA가 체결되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서는 기업

한 · 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기업중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다음 중 어느 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 3A-7>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표 A-7> 한 · 미 FTA 체결시 가장 불리한 기업군

선택지	응답업체수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중견기업	0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신생기업	1
대형 IT서비스(SI)기업	2
소규모 IT서비스(SI)기업	3
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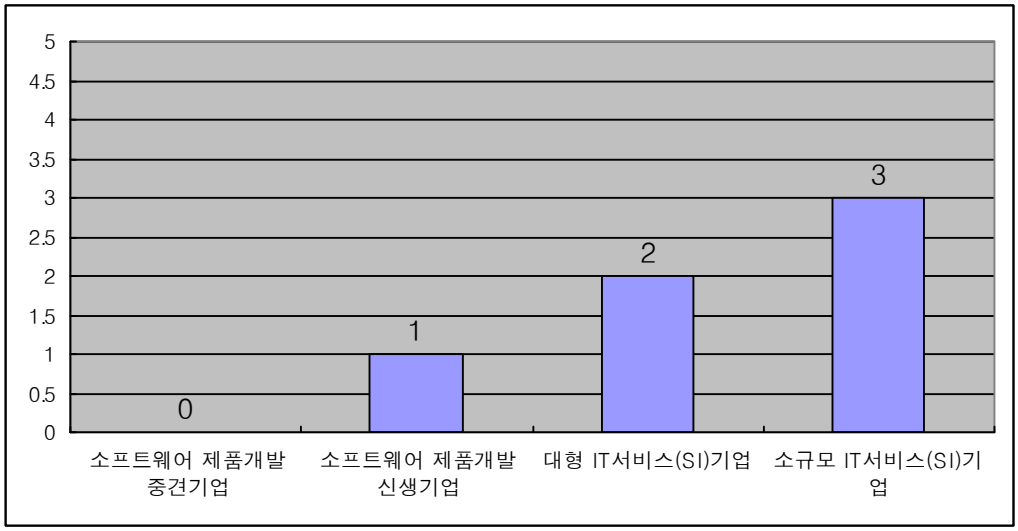

<그림 A-7> 한 · 미 FTA 체결시 가장 불리한 기업군

응답결과를 보면, 소규모 IT서비스(SI)기업을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에는 대형 IT서비스(SI)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신생기업을 들고 있다.

한 · 미 FTA 체결에 의해서 유리한 그리고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유형을 동시에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순위에 의해서 유리한 순서대로 열거하면,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중견기업과 대형 IT서비스(SI)기업은 가장 유리한 것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신생기업과 소규모 IT서비스(SI)기업은 불리한 편으로 나타났다.

<표 A-8> 한 · 미 FTA 체결시 가장 유리/불리한 기업군

선택지	유리한 기업유형	불리한 기업유형	종합 순위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중견기업	1	0	1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신생기업	0	1	3
대형 IT서비스(SI)기업	3	2	1
소규모 IT서비스(SI)기업	1	3	4
계	5	6	

사. 한 · 미 FTA 체결 이후의 방향 및 지지도

① 인력파견 계획

한 · 미 FTA 체결 후 관리인력, 개발인력 또는 영업인력을 미국으로 파견할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 A-9>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표 A-9> 한 · 미 FTA 체결 후 인력파견 계획

선택지	응답업체수
예	5
아니오	2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2
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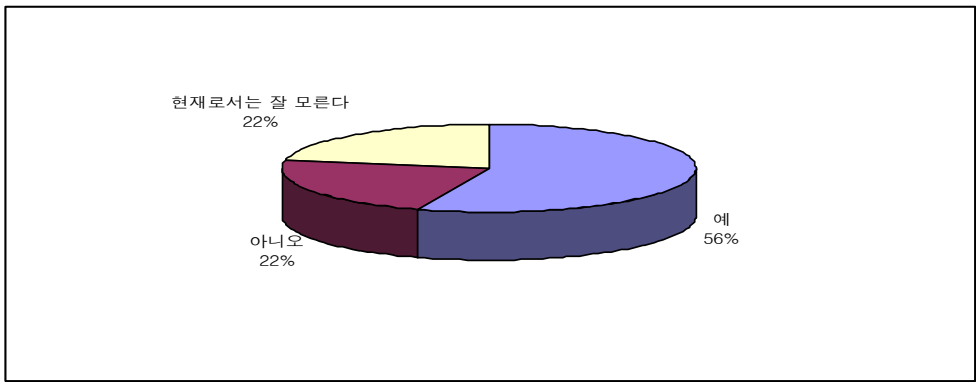

<그림 A-8> 한 · 미 FTA 체결 후 인력파견 계획

② 한 · 미 FTA 체결의 지지 정도

"한 · 미 FTA 체결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 지지하는 정도를 괄호에 번호로 기재해주세요."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A-10> 한 · 미 FTA 체결에 대한 지지 정도

(지지하지 않음)	0	1	2	3	4	5	(적극 지지함)

(평균치:3.44)

지지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기재한 응답의 평균치는 3.44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중간점수(3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적극 지지 또는 반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설문 조사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는 한국IT서비스학회와 공동으로 "한 · 미 FTA 체결과 소프트웨어산업 연구"(연구책임자: 국민대 김현수 교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하여 귀사 및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음 양식에 제시된 질문에 성실하게 기재해주시면 산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응답회사 일반 현황

회사명		업종	
종업원수	명	기업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	
작성자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	팩스:	이메일:

1. 귀사에서 미국에 진출한 또는 진출가능한 사업분야는?

(기진출, 진출가능에 표시 후, 제품명이나 사업명 등을 기재)

구분	기진출	진출가능	구체적 제품명(사례)
SW패키지 개발판매			
컴퓨터 관련 서비스			
전자상거래			
기 타			

2. 한미FTA의 영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2-1. 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 · 미 FTA 체결의 영향을 받는다면 언제부터 받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1) 발효 즉시	2) 발효 후 1년 이내
3) 발효후 2~3년 이내	4) 발효 후 4~5년 이내
5)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2-2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다면 귀사의 기업활동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1) 예 (긍정적 영향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3-1로 이동)

(2) 아니오 (부정적 영향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4-1로 이동)

(3) 예 그리고 아니오 (긍정적, 부정적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3-1, 4-1 포함)

_____

3. 긍정적 영향 (Positive Impacts)

3-1 한미FTA 체결이 귀사에 가져다 줄 긍정적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 모두 o 표시)

a.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감소

b. 미국 수입제품/서비스 가격의 인하

c. 미국시장에서 외국경쟁기업 간의 우위점유

d. 생산(개발)비용 절감

e. 시장통합, 인력수급, 자원공급 용이

f. 미국 외 국가에 대한 수출능력 향상

g. 기타 _____

3-2 한미FTA 체결될 경우 귀사가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은 무엇입니까?

_____

_____

_____

3-3 한미FTA가 가져올 귀사의 수출액의 증가를 정량화 하실 수 있습니까?

a. 예 (예상 수출 증가액: $ _____)

b. 아니오

3-4. 한 · 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기업중 <u>가장 유리한</u>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다음 중 어느 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a.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중견기업 b.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신생기업

c. 대형 IT서비스(SI)기업 d. 소규모 IT서비스(SI)기업

e. 기타( )

4.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s)

4-1 한미FTA체결로 귀사에 큰 규모의 구조조정 비용/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

a. 예 b. 아니오

4-2 한미FTA체결에 따라 귀사에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손실이 있다면 어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a. 심각한 수준 b. 적당한 수준

c. 약간 d. 전혀 없을 것이다

4-3 한미FTA체결에 따른 귀사의 손해를 제거 또는 축소하기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 지원 등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

다.

_____

_____

_____

4-4. 한 · 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기업 중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다음 중 어느 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a.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중견기업 b.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신생기업
c. 대형 IT서비스(SI)기업 d. 소규모 IT서비스(SI)기업
e. 기타( )

5. 한미FTA 체결 후 관리인력, 개발인력 또는 영업인력을 미국으로 파견할 생각이 있습니까? ( )

a. 예 b. 아니오 c.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6.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해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_____

_____

7. 귀하는 한미FTA 체결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는 정도를 괄호에 번호로 기재해주세요( )

(지지하지 않음) 1 2 3 4 5 (적극 지지함)

미국과 어떤 형태로든 교역을 한 경험이 있거나 교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래 사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요? 아래 항목에 해당여부를 표시하시고 참고번호에 번호기입을 하신 후 별도의 표에 참고번호(귀하의 편의대로 일련번호 부여 후에 9번 항목에서 이 번호를 사용함)와 구체적인 규정, 사례, 경험 등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해당 여부	참고 번호
소프트웨어 제품		
관세관련 이슈		
① 수입관세		
② 다른 중요 세금 및 부과요금		
③ 통관절차		
④ 수입 라이선스 요구		
⑤ 원산지규정/원산지증명		
검사/검역, 표준, 인증 관련 이슈		
① 강제적 (Mandatory) 표준		
② 검사/검역 조건 및 절차		
③ 시험 및 인증 요구		
④ 묵시적 (market-based) 표준		
기타 미국내 규정 이슈		
① 제품/상품에 부과되는 미국내 세금 (예: 물품세, 부가가치세 등) 또는 요금 (라이선스 요금 등)		
② 라이선스(면허) 요구		
③ 정부구매 등에서 수입품보다 미국제품을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규정 또는 관행		
④ 비자요구 및 노동허가 (work permit) 요구		
⑤ 금융 및 환전관련 이슈		
컴퓨터 관련 서비스 및 투자		

항 목	해당 여부	참고 번호
시장진입 관련 이슈		
① 특정 분야의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② 자산 제한(Equity limitations)		
③ 정부허가를 위한 라이선스 요구 및 관련 절차		
④ 비자요구 및 노동허가 (work permit) 요구		
⑤ 외국인에 대한 자격승인 또는 기타 라이선스 요구		
⑥ 규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추가적 투자위험 증가		
투자 이후 이슈		
① 세금제도, 인센티브 제공, 정부구매 특혜 등을 포함한 자국기업 우대 법, 규정		
② 기술이전, 자국내 원자재 조달 등을 요구하는 법, 규정		
③ 투명하지 않고, 일관성 없으며 안정적이지 못한 법, 규정 (예: 부문별, 지역별 규정의 불일치 등)		
④ 기타 외국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정부 규정 또는 요구 (자국기업 혜택제도가 아니더라도)		
⑤ 이윤의 본국송환 제한		
통제 및 경쟁관련 이슈		
① 정부허가 취득 절차		
② 정부 결정에 소청(appeal)하는 법제도		
③ 경쟁저해행위 (anti-competitive practices)를 해결하는 법제도		
④ 정부계약의 입찰, 낙찰 절차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미비		
세금관련 이슈		
① 원천징수 세금 관련		
② 외국기업에 차별적 과세제도		
③ 외국기업에 차별적인 세금 인센티브제도		
사회적 또는 시장 관련 이슈		
1.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엄격한 사회윤리 가이드라인		
2. 현지인 고용 요구		
3. 비즈니스 환경 및 문화		

항 목	해당 여부	참고 번호
4. 시장 및 소비자의 자국 제품/서비스 선호		

9. 미국진출 시 불리한 여건을 경험한 사례 또는 들어서 알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에 추가 기록 가능)

참고번호	(　　) (위 8번 문항에서 부여한 참고번호)
발생 년월	
발주기관/또는 주사업자	
사업명	
진출에 장애(불리한) 사례 (구체적으로 기술)	
개선방향	

참고번호	(　　)
발생 년월	
발주기관/또는 주사업자	
사업명	
진출에 장애(불리한) 사례 (구체적으로 기술)	
개선방향	

참고번호	(　　)
발생 년월	
발주기관/또는 주사업자	
사업명	
진출에 장애(불리한) 사례 (구체적으로 기술)	
개선방향	

--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성실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